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 3377호

2016. 11. 3.(목)

함께
서울



서울특별시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16-215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16-2156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5
제2016-2160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제2016-21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7

◆ 고 시

제2016-342호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9
제2016-34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지형도면 고시 (동국대학교)	18
제2016-344호 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23
제2016-3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46
제2016-34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46
제2016-347호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48
제2016-3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50

◆ 공 고

제2016-2125호 2016년도 제19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53
제2016-2127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55
제2016-2141호 도시공원(서울숲) 관리위탁 공고	55
제2016-214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56
제2016-2147호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57
제2016-214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0
제2016-214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61
제2016-2153호 도시관리계획[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62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64
제2016-159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64

◆ **구 고 시**

제2016-123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 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용산구)	66
제2016-1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용산구)	72
제2016-150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성북구)	73
제2016-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성북구)	74
제2016-102호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노원구)	80
제2016-90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은평구)	83
제2016-77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양천구)	84
제2016-91호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고시(강서구)	85
제2016-78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고시(금천구)	87
제2016-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영등포구)	93
제2016-10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서초구) ...	100
제2016-1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강남구)	101

◆ **구 공 고**

제2016-9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열람공고(동작구)	104
---	-----

◆ **사업소고시**

제2016-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6
제2016-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6
제2016-2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7
제2016-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7
제2016-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8
제2016-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8
제2016-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한강사업본부)	109

◆ 사업소공고

제2016-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공고(송파소방서) 110

◆ 기 타

제2016-3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1

제2016-37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1

제2016-37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

제2016-37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2

제2016-37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13

자 치 법 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5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이 2016. 9. 28. 시행됨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및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고·의례 목적의 음식물 가액기준을 5만원 이내에서 청탁금지법과 동일한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는 외부강의등도 사전 승인 또는 신고하도록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공무원 본연의 업무에 최대한 전념하도록 함.

또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반납의 문제 등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적용함.

2. 주요내용

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7조)

-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이 처음 부정청탁을 받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함.

나.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안 제1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고·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다.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구체화 (안 제13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공무원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는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함.

라.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안 제18조)

-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외부강의등의 유형, 필요성과 그 밖의 신고제외 대상 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행동강령총책임관이 정하도록 함.
- 공무원은 기준초과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 조사담당관,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5동 6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사담당관 (전화 : 02)2133-3083, 팩스 : 02)2133-1306, E-mail : soliphan@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56호**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2017년부터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위탁사무가 대행사무로 전환되는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계약심사 대상사업을 명확히 하고 규칙 중 일부 조항을 보완하여 계약심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가. “추정가격”, “추정금액”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
- 나.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을 계약심사대상에 포함(안 제3조)
- 다. 계약심사 요청서식에 “입찰종료 예정일” 기재란 추가 등(안 별지1~8)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계약심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9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약심사과(전화: 02)2133-3303, FAX: 02)2133-1032, E-mail: 201204132@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0호**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6.7.12.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안 제33조의2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제2항·제3항, 제36조의2, 제90조제3항, 제91조의2)
- 나.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면적계산 방식을 기존 ‘층별 가중 적용방법’에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동일하게 ‘건물사용면적 비율별 안분 배분 방법’으로 개선(안 제29조제2항)

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관련법령 내용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 추가 신설 함(안 제38조제1호·제4호·제8호·제9호·제10호)

라.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시유재산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당초 위임관리 목적 또는 용도와 다르게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분할 납부 방법을 일반재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안 제3조제5항, 제22조, 제26조제5항제4호, 제3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참조: 자산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FAX: 02-2133-1031, E-mail: 68messag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61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정을 신설·보완하는 등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여 법령 및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해석 및 적용에 혼란이 있는 일부내용을 명확하게 규

정하고, 기부채납의 근거법령을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규정(안 제6조제1항제5호, 제13조제1항)

- 나.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용도폐지신청서 서식을 신설하고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조건 서식을 현실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5조제3항, 별지 제9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자산관리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산관리과(전화: 02-2133-3284, FAX: 02-2133-1031, E-mail: 68message@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2호

신내동 640번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57호(2015.09.03.)로 고시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신내동 640번지 행복주택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성명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4. 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② 대 지 면 적(㎡)			5,374.50	5,374.50	
③ 건 축 면 적(㎡)			2,684.41	2,684.20	
④ 연 면 적 (㎡)			23,471.20	23,475.20	
⑤ 건 폐 율(%)			49.95	49.94	
⑥ 용 적 륜(%)			276.29	276.3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 지상24층	1동, 지하1층, 지상24층	
	주택 형별	공공임대	전용 36㎡ : 140세대 전용 44㎡ : 89세대	전용 36㎡ : 140세대 전용 44㎡ : 89세대	
		계	총 229세대	총 229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5. 10월 ~ 2018. 3월	2016. 07월~2019. 5월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관리사무실			59.79㎡			59.79㎡			
	MDF실			18.98㎡			18.98㎡			
	방재실			27.57㎡			27.57㎡			
	경비실			34.69㎡			34.69㎡			
	주민공동시설			290.48㎡			271.61㎡			
	경로당			189.52㎡			189.52㎡			
	기계,전기실,발전기실			491.05㎡			488.08㎡			
	부설주차장			지상 : 5,071.49㎡ / 161대			지상 : 5,061.11㎡ / 161대			아파트 주차장
⑩ 도시 계획시설	주차장			지상 : 57.79㎡ / 28대 지하 : 2,619.23㎡ / 72대			지상 : 58.04㎡ / 28대 지하 : 2,653.95㎡ / 72대			공영 주차장
⑪ 단위 세대 면적	구 분			세대수	전용면적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변경 전	장기 전세	36A	122	36.36	22.37	58.73	24.86	83.59	
			36B	18	36.30	21.93	58.23	24.83	83.06	
			44A	82	44.68	26.99	71.67	30.57	102.24	
			44B	7	44.76	26.94	71.70	30.61	102.31	
	변경 후	행복 주택	36A	122	36.36	22.43	58.79	24.76	83.55	
			36B	18	36.30	22.00	58.30	24.73	83.03	
			44A	66	44.68	27.07	71.75	30.43	102.18	
			44B	7	44.76	27.02	71.78	30.50	102.28	
			44C	16	44.16	26.74	70.90	30.08	100.98	

5.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서울신내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일원	1,030,247.3 (5,374.5)	-	1,030,247.3 (5,374.5)	서고시 제2000-245호 (2000.09.02)

- ※ 면적 항목중()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내동 640번지) 면적임
-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 건설부고시 제138호 (1990.03.21.)
- ※ 신내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 서고시 제391호 (1991.12.30.)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내동 640번지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374.5	-	5,374.5	100.0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1) 시설보호지구

구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시 설 보호지구	학교시설 보호지구	중랑구 신내동 739전 일대	216,848.1 (5,374.5)	서고시 제2000-245호 (2000.09.02.)	-

※ 면적 항목중()의 숫자는 계획대상지(신내동 640번지) 면적임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차장 ③	주차장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5,374.5	-	5,374.5	서고시 제1998-69호	공간적 범위 결정

※ 도시계획시설(철도, 6호선 봉화산역) 일부 중복(321㎡)

나) 주차장 공간적범위

(1) 공간적범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구분	기정	변경		
변경	주차장 ③	주차장	신내동 640 번지	면적 (㎡)	3,785.29	증) 93.01	서고시 제1998 -69호	공간적 범위 결정
				높이 (m)	지하1층~ 지상1층(일부) (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	-		

(2)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주차장 ③	주차장	주차장 공간적범위 결정(변경) - 면적:3,785.29㎡ → 3,878.30㎡ 증) 93.01㎡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기존 공 영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행복주택 건립으로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복합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 결정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변경없음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봉화산역 공영 주차장 특별계획 구역	중랑구 신내동 640	용도	지정 용도	주차장, 공동주택
			불허 용도	관련법상 지정용도 및 그 부대시설 이 외의 건축물
		건폐율(%)		당해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용적률 (%)		기존허용률 : 280% 허용용적률 : 300%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높이		최고높이 81m 이하

※ 도시계획시설(철도, 6호선 봉화산역) 부분은 지정용도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음

다)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사항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봉화산역 공영 주차장 특별계획 구역	중랑구 신내동 640 번지	배 치	• 건축물의 주방향은 채광, 통풍 등을 고려한 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형 태	• 공동주택의 입면은 색채, 창호, 발코니 등의 구조물, 외장재료 등의 변화를 통한 입면의 변화를 권장 • 모든 공동주택의 외벽에 주택건설사업자의 단지명이나 회사의 심볼을 표시할 경우 측벽에 한하여 허용하며 글자를 표시 할 경우 서체는 현대적이고 간결한 글씨체를 사용할 것을 권장 • 피로티 설치시 구조의 최소높이는 통경확보 등 시야차단 개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 2개층 이상 설치하여야 함. 단 구조안전이 확보되고 보행통로인 경우에는 1개층으로 할 수 있음
		색 채	• 건축물의 색채는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도모하고, 가로환경의 연속성 있는 경관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벽면과 지붕의 재료 및 색채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2. 시각적 자극을 유발하는 원색 및 형광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차색 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3. 외장재는 목재, 벽돌 등 자연친화형 재료를 권장하며 재료 본연의 색채와 소재감을 그대로 적용한다.
		건축 한계선	• 신내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와 북부간선도로와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계획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5m 이격거리 확보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폭3m 이격거리 확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서는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주차장, 지하철출입구 또는 환기구 등을 건물 또는 대지 내에 설치하는 경우에 당해 시설물에서 제외한다.

라)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봉화산역 공영 주차장 특별계획 구역	중랑구 신내동 640 번지	대지내공지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대지안의 공지 조성 - 신내로 및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전면공지는 보도로 조성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북부간선도로변,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일부, 신내로변 일부
		교통 처리 계획	보행 동선 - 봉화산역(6호선) 출입구와 인근 하천변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연계와 북부간선도로출구 변 보행자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차량 동선 - 주차장으로 이동이 용이하도록 차량동선 설정 공영주차장과 입주민 차량 이동이 원활하도록 함
		경관계획	-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간선도로변 경관 특화

5)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가)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신내동 640 번지	-	5,374.5	-	5,374.5	서울시고시 제2013-199호 (2013.06.27)

나)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구 분		계 획 내 용
명 칭		- 봉화산역 공영주차장부지 특별계획구역
면 적		- 5,374.5㎡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		- 학교시설보호지구
도시 계획 시설	노외 주차장	- 도시계획시설 : 주차장 - 공간적 범위결정 평균해수면기준 +21.0m~+28.9m(지하1층~지상1층)
건축 관련 계획	용도계획	- 지정용도 : 주차장, 공동주택
	건축 한계선	• 신내로변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와 북부간선도로와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계획 - 북부간선도로변 :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5m 이격거리 확보 - 신내로, 북부간선도로 진출로변 : 보행자 공간 확보를 위해 폭3m 이격거리 확보 (보도부속형 전면공지 설치)
	건폐율	- 50%이하
	용적률	- 기준허용률 : 280% - 허용용적률 : 300% - 상한용적률 : 해당없음
	높이제한	- 최고높이 81m 이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1) 도시계획시설사업(공영주차장)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중랑구 신내동 640번지

나) 사업의 종류와 명칭

(1) 사업의 종류 : 서울시 도시계획시설(공영주차장)

(2) 사업의 명칭 : 신내동 640번지 내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영주차장 건립공사

다)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시설	시설의세분	규모(㎡)	비고
주차장	공영주차장	2,711.99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2) 성 명 :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대표자 변창흠)

마)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9.05.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공부상 면적	편입 면적	주소	성명	권리 종류	권리자	
									주소	성명
계		1필지		-	5,374.5					
1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640	주차장	5,374.5	5,374.5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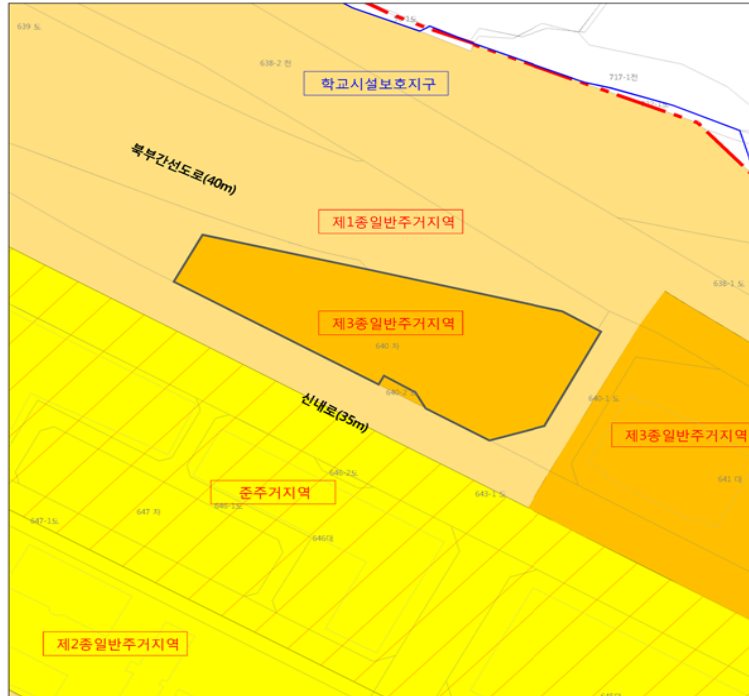
6. 지형도면 등 관계도면 : 첨부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임으로 측량, 그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7.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 생략(비치된 도서와 같음)

8.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2133-7070) 및 에스에이치공사 건축설계부(☎3410-7965)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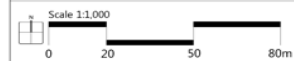
■ 용도지역·지구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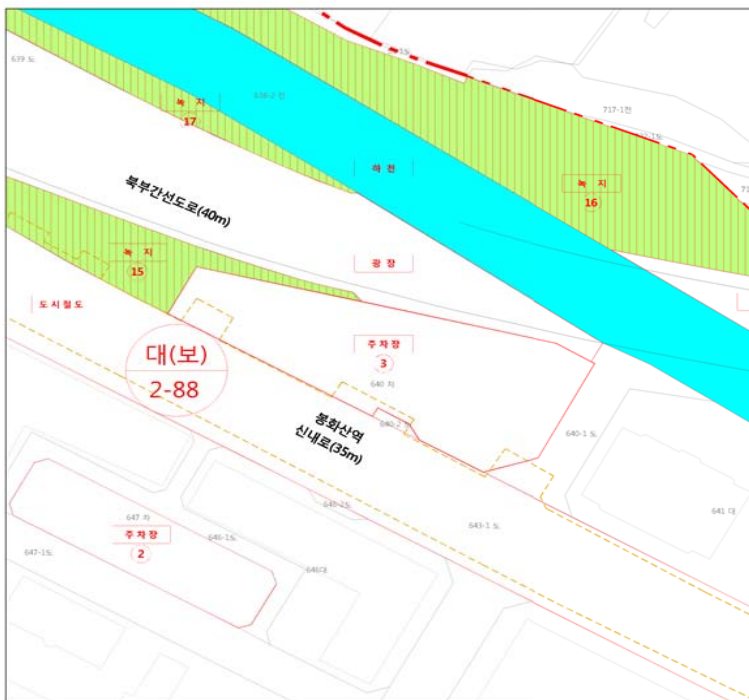
서울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용도지역·지구결정도

- 지구단위계획구역
- 특별계획구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학교시설보호지구



■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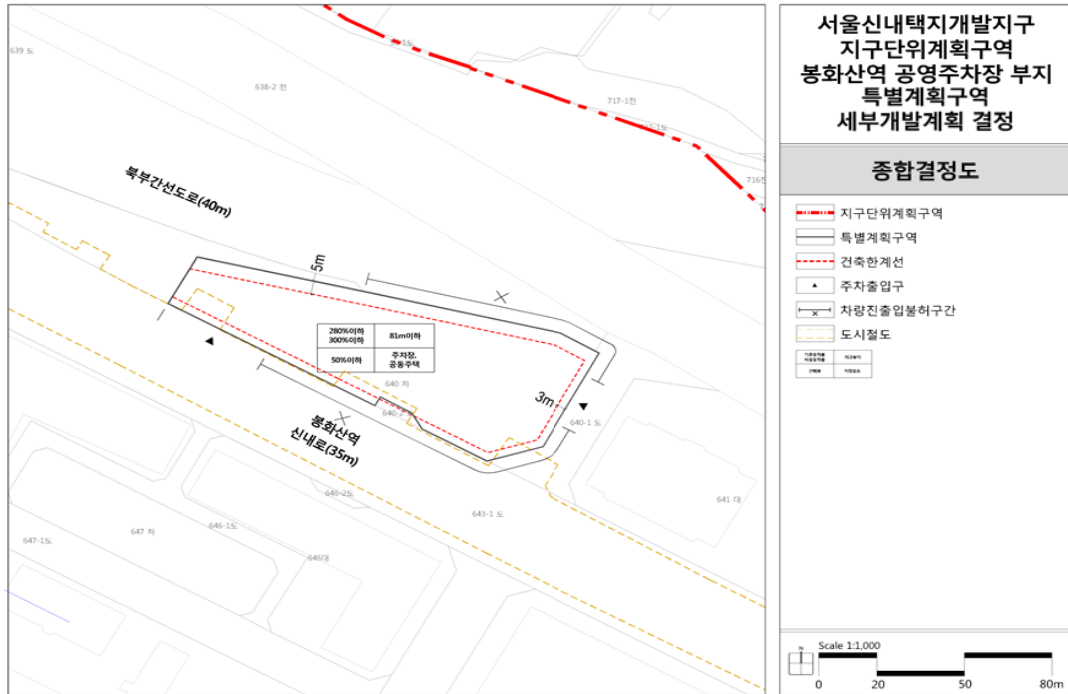
서울신내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봉화산역 공영주차장 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도시기반시설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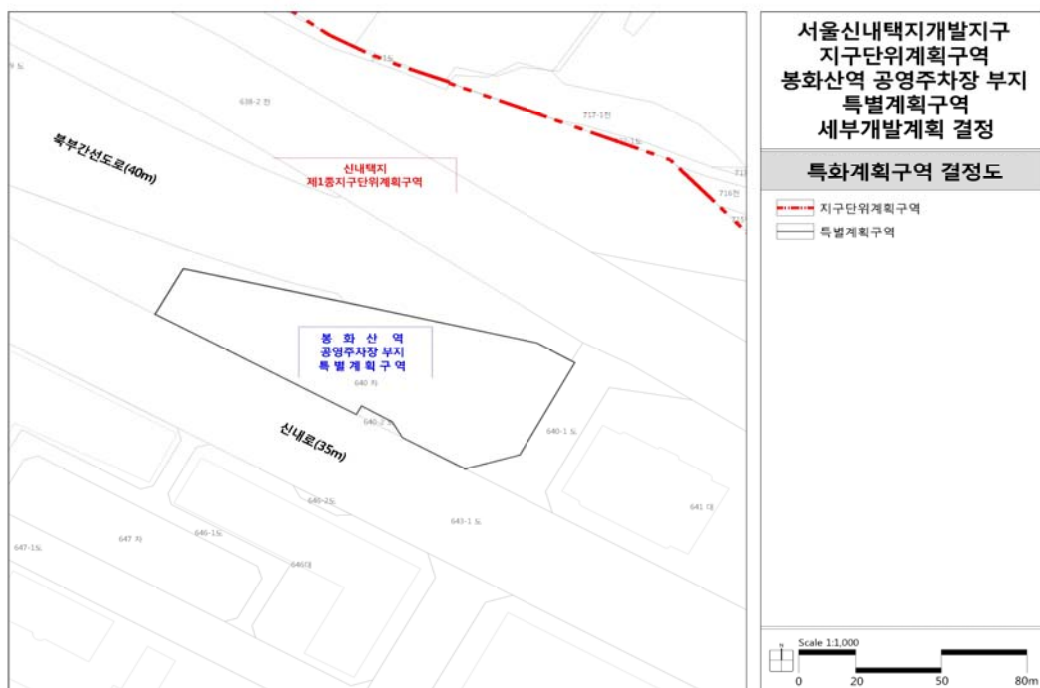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로
- 녹지
- 하천
- 광장
- 주차장
- 도시철도



■ 종합결정도 (변경없음)



■ 특별계획구역도 (변경없음)



■ 공간적범위 결정(기정)도- 평면



■ 공간적범위 결정(변경)도- 평면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3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지형도면 고시(동국대학교)

서울특별시고시 제225호(1978.5.17)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3-469호(2003.01.06)로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7호 (2012.07.12)로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중구 필동3가 26-1 일대 동국대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변경결정 취지

- 대학이 갖는 도시적 의미와 역할을 고려하여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외부공간의 역할 증대 및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한 세부시설조성계획(기본계획) 수립.
- 대학의 입지적 특성을 반영한 구역별 관리계획(일반관리, 상징경관, 외부활동, 녹지보존)을 수립하여 지역과 연계된 대학의 도시적 성장기틀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구현하고자함.

2.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1)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변경없음)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변경	학교	대학 (동국대학교)	중구 필동3가 26-1일대	153,698.4	-	153,698.4	서고시 제225호 (1978.5.17.)	-

2)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
(1) 구역계획

구역	구분	면적 (㎡)	구역	구분	면적 (㎡)
일반관리구역	①	24,675	상징경관구역	⑥	16,049*
	②	20,332	소 계		16,049
	③	15,028	외부활동구역	⑦	27,615**
	④	20,019		⑧	10,989
	⑤	14,860	소 계		38,604
			녹지보존구역	⑨	4,131.4***
소 계		94,914	소 계		4,131.4
합 계					153,698.4

*공원부지 134㎡ 포함, **공원부지 26,129㎡ 포함, ***공원부지 4,131.4㎡ 포함

(2) 밀도계획(건폐율)

구분	밀도산정 기준면적(㎡)	법 정 건폐율(%)	사용건폐율 (%)		관리 건폐율 (%)	비고
			기정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120,206.40	33.00*	33.70	32.65	33.68	○ 밀도 산정시 제외한 면적 - 공원부지 : 30,394.4㎡ ※ 산정기준 면적 계산(㎡) 153,698.4-30,394.4 = 123,304.0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통해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완 화받은 사항임 (기정 30% → 완화 33%, 서울특별시 중구 공 고 제2014-5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1,082.30	6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2,015.30	60.00				
계	123,304.00	33.68				

※ 학교용지 면적(153,698.4㎡) 대비 법정 건폐율 27.02%, 사용 건폐율(변경) 26.20%

(3) 구역별 밀도계획(용적률·높이)

구역 구분	용적률 (%)						높이(m)*	비고
	법정 용적률	사용용적률		계획 용적률	이전 용적률	관리 용적률		
		기정	변경					
①	150.00	158.12	158.12	158.12	+15.00	16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②	150.00	219.09	219.09	219.09	+75.00	22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28m 이하	—
③	151.28	92.91	92.91	92.91	—	100.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④	150.00	153.76	156.60	156.60	+15.00	16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해화별관 증축
⑤	155.49	150.09	132.75	132.75	—	15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20m 이하	해화문부지 교육연구시설 변경계획에 따른 면적변경
⑥	150.00	25.93	25.93	25.93	-95.82	3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⑦	150.00	0.00	0.00	0.00	—	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⑧	150.00	0.00	0.00	0.00	-61.01	5.00	●지표로부터 최대 12m 이하	—
⑨	0.00	0.00	0.00	0.00	—	0.00	●건축물 배치불가	공원부지

-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에 부여된 여유 관리용적률은 해당 구역의 특성을 강화하거나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

(4) 변경 건축물 조서

구분	건물명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지상층면적(㎡)				층수 (지하)		비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제1종 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④ 구역	혜화별관	620.63	620.63	-	-	1,759.02	2,327.29	-	-	1,696.73	2,265.00	-	-	지상 3층 (지하) 12m	지상 4층 (지하) 16m	1개층 증축
⑤ 구역	교육 연구 시설	교육 연구관	949.82		915.55	5,890.68		4,941.93		1,508.54		2,562.77		지상 4층 (지하) 19m	기존건축물 분동 및 계획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교육 연구관 별관	699.54		46.84	14,041.69		600.93		2,098.62		140.52		지상 3층 (지하) 12m		
소계		3,854.93	2,269.99	669.92	962.39	23,241.63	22,259.66	4,545.81	5,542.86	8,432.95	5,872.16	2,217.21	2,703.29	-	-	
		합	1,584.94	증	292.47	합	981.98	증	997.05	합	2,560.79	증	486.08	-	-	

※ 건축물의 규모, 위치 등 세부시설조성계획(변경) 상세내용은 고시도면(건축물 조서 포함)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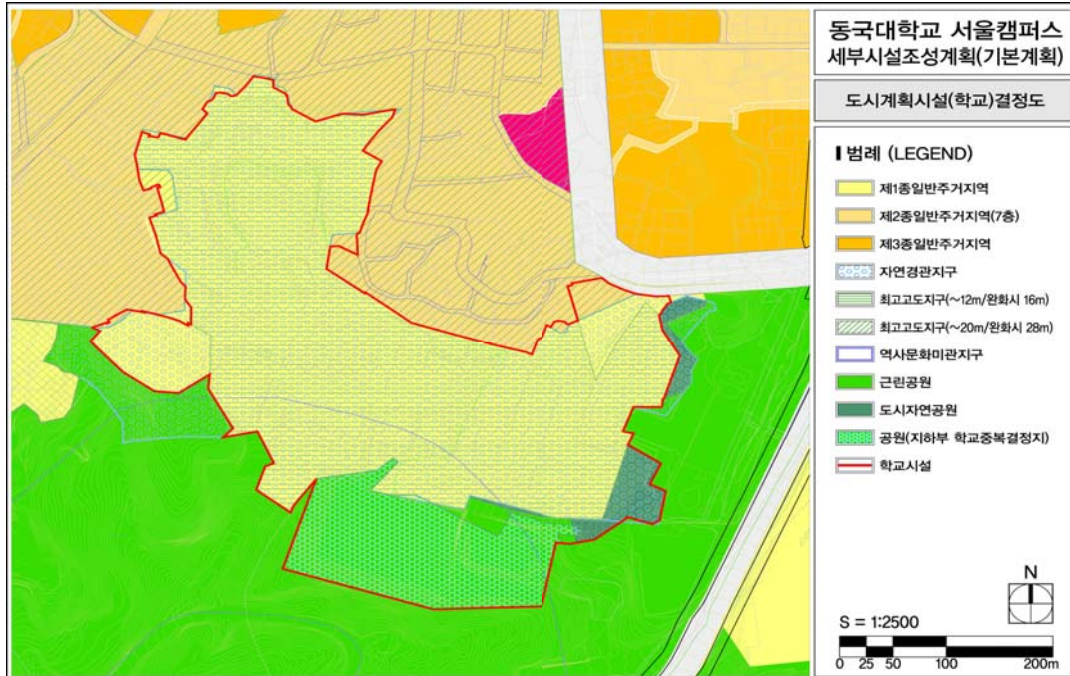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도면(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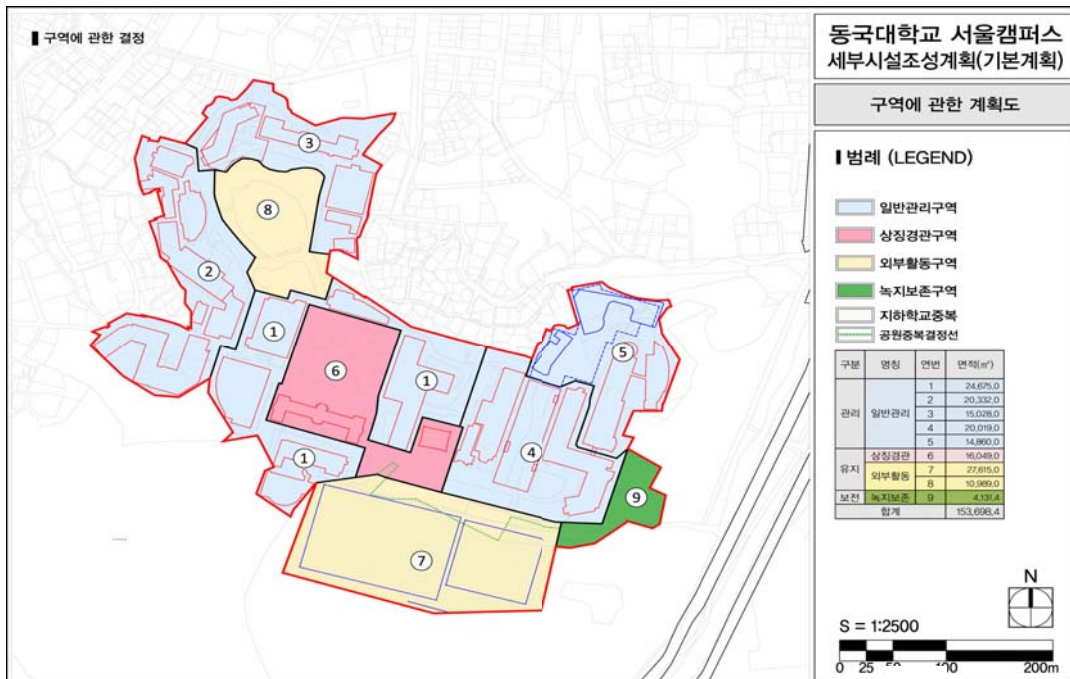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전화 2133-8413) 및 중구 도심재생과(전화 3396-5754)에 관계 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서울 도시계획 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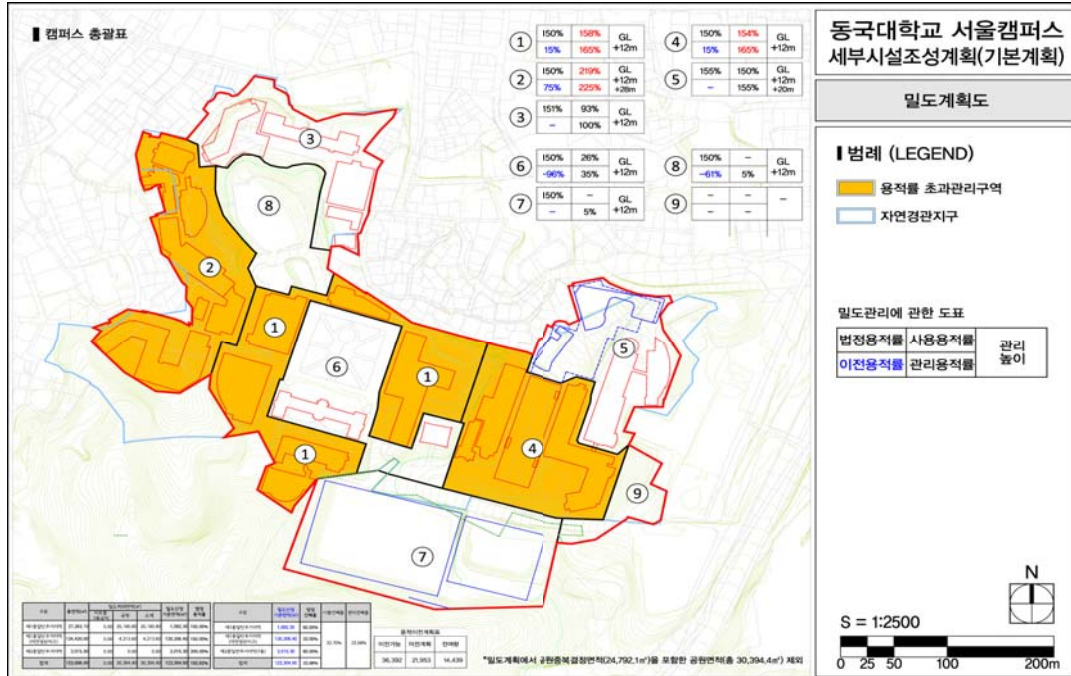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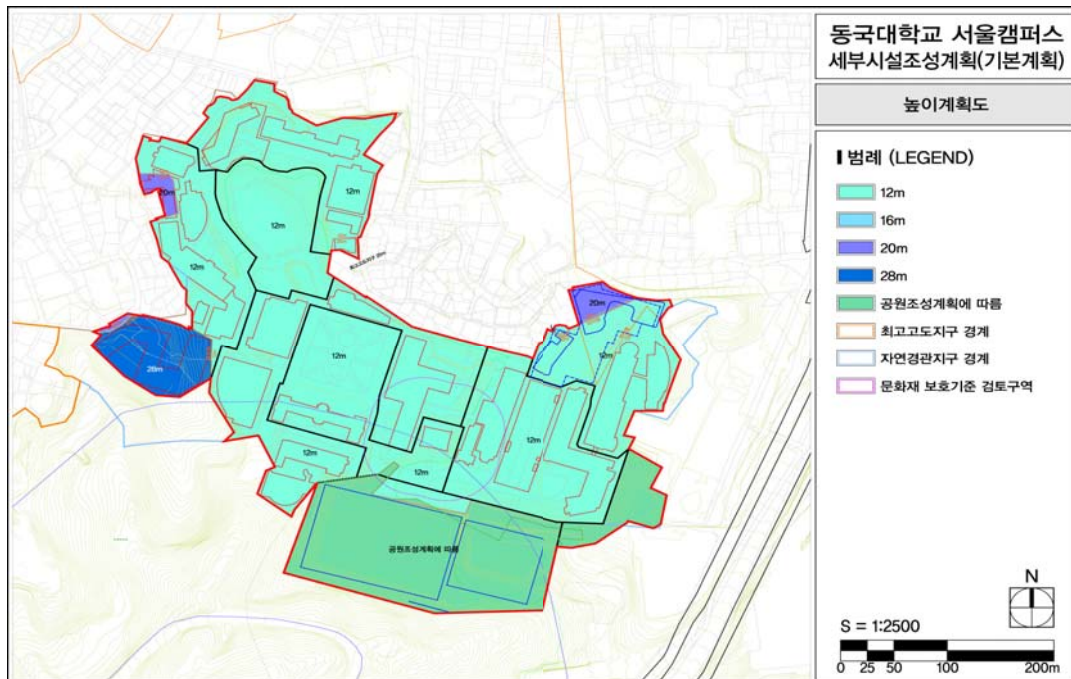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구역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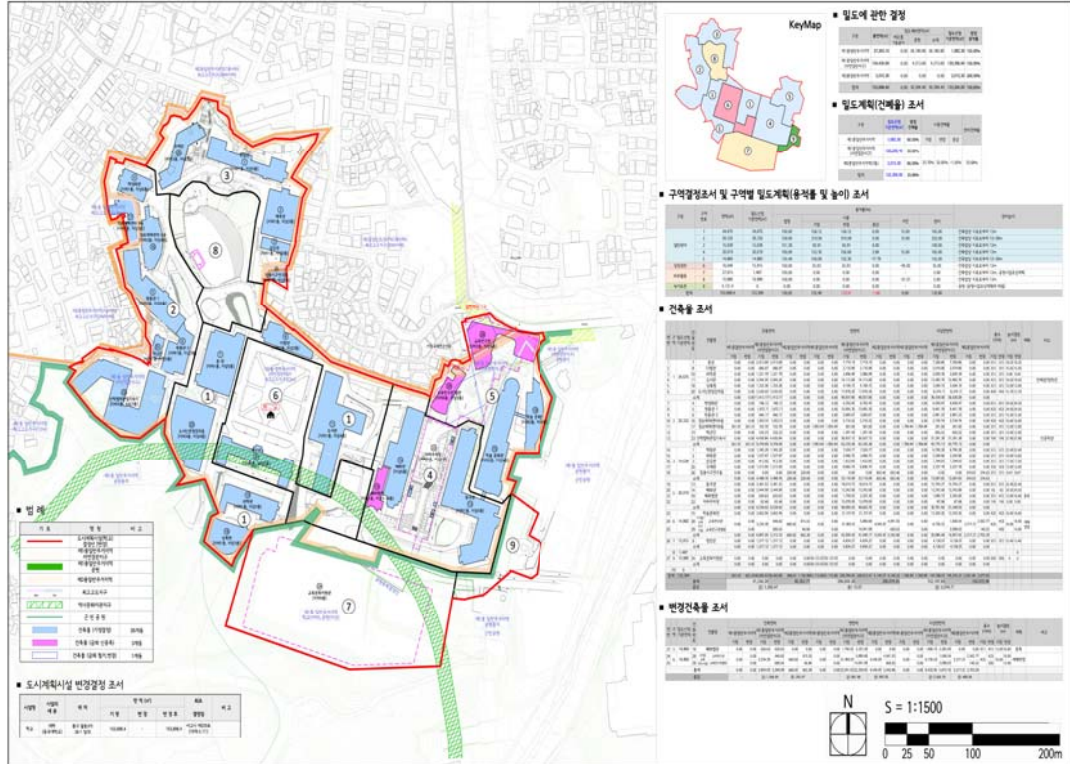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밀도계획(높이)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건축계획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4호

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5호(2013.12.05.)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외 3개소에 대하여 2016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6.10.12.)심의 등을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외 3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및 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I. 결정(변경) 취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된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등 3개소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하고 지형여건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상계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제함.

II.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00	증) 18	3,318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361	감) 102	2,259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7,390	감) 597	6,793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8,880	감) 8,880	-	구역 해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망우	망우동 83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망우동 83번지 일대	3,318	인접 과소필지 편입 및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신내	신내동 38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중랑구 신내동 385번지 일대	2,259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도로 제척
변경	상일	상일동 445번지 일대 (소규모 단절토지)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6,793	지구단위계획이 불필요한 하천 제척
변경	상계	-	노원구 상계동 산117-3번지 일대	-	대상지 현황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목적에 불부합하여 구역 해제

I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변경	변경후		
계	3,300	증) 18	3,318	100.0	
자연녹지지역	3,300	감) 367	2,933	88.4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385	385	11.6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망우동 83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318	•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제1종일반주거지역 편입 등	

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망우동 83번지 일대	• 구역계 변경으로 중로3류 국지도로 1개소 구역 외 사항으로 변경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신설	1	3,318	망우동 83-4	329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망우동 83-5	330		
			망우동 83-6	7		
			망우동 83-8	210		
			망우동 83-9	200		
			망우동 83-10	200		
			망우동 83-11	152		
			망우동 83	1,136	공동개발(지정)	
			망우동 83-1	27		
			망우동 83-2	100		
			망우동 81-2	227		
			망우동 80-1	124	공동개발(지정)	
			망우동 80-5	200		
			망우동 82-10	76	공유지(중량구) - 구거	

※ 가구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

※ 구역전체 통합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1종일반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 단,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순부담 기준으로 15% 이상 해야 함

② 필지 정형화

구분	내용
필지정형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자율적인 필지 정형화를 권장함

- ※ 필지 정형화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발생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
 ※ 공동개발 지정 필지에 대해서도 정형화를 위한 필지교환 가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	망우동 83번지 일대	불허용도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제6호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기준 / 허용 / 상한 - 50% 이하 / 50% 이하 / - (법정2배 이하)										
			높이	●4층 이하										
			형태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계획 및 재료 선택										
			색채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선	<table><tr><th>적용대상</th><th>건축한계선</th></tr><tr><td>●망우로87길변(B=20m) ●양원역로8길변(B=12m)</td><td>●대지경계선에서 1m</td></tr><tr><td>●양원역로8길변 (B=7:이면도로변)</td><td>●대지경계선에서 1m (80-1번지 일부부간 2m 이내)</td></tr><tr><td>●망우동 82-10 구거변</td><td>●구거 중심선에서 양측 2m</td></tr><tr><td>●양원역로8길(B=7) 남측 각각부</td><td>●이면도로에서 수직방향 3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1m 별도)</td></tr></table>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망우로87길변(B=20m) ●양원역로8길변(B=12m)	●대지경계선에서 1m	●양원역로8길변 (B=7: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80-1번지 일부부간 2m 이내)	●망우동 82-10 구거변	●구거 중심선에서 양측 2m	●양원역로8길(B=7) 남측 각각부	●이면도로에서 수직방향 3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1m 별도)
				적용대상	건축한계선									
				●망우로87길변(B=20m) ●양원역로8길변(B=12m)	●대지경계선에서 1m									
				●양원역로8길변 (B=7:이면도로변)	●대지경계선에서 1m (80-1번지 일부부간 2m 이내)									
●망우동 82-10 구거변	●구거 중심선에서 양측 2m													
●양원역로8길(B=7) 남측 각각부	●이면도로에서 수직방향 3m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1m 별도)													

- ※ 서로 다른 용도지역 공동개발시 본 지침을 적용함
 ※ 제1종일반주거지역과 공동개발 시 용적률은 가중평균하여 적용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망우로87길변(B=20m)	• 보도형으로 조성	도면 참조
	• 양원역로8길변(B=12m)		
	• 양원역로8길변(B=7:이면도로변)	• 차도형으로 조성	
	• 망우동 82-10 구거변	• 보도형으로 조성	
	• 양원역로8길(B=7) 남측 가각부	• 차도형으로 조성	

나.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망우로87길(B=20m), 양원역로8길 및 망우로87길 일부	• 차량출입 불허	도면 참조

②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변경	변경후		
계	2,361	감) 102	2,259	100.0	
자연녹지지역	2,361	감) 102	2,259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신내동 385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259	•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 고
신설	1	2,259	신내동 383-5	174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신내동 384-6	330	
			신내동 384-8	255	
			신내동 385	1,027(944)	
			신내동 385-7	330	
			신내동 386-2	226	

※ 가구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 ()는 구역 내 면적임

※ 구역전체 통합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2종일반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 단,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순부담 기준으로 25% 이상 해야 함

※ 통합개발 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외부의 동일소유자 필지 공동개발 가능함

② 필지 정형화

구분	내용
필지정형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자율적인 필지 정형화를 권장함

※ 필지 정형화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발생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

※ 공동개발 지정 필지에 대해서도 정형화를 위한 필지교환 가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	신내동 385번지 일대	불허용도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제6호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 50% 이하 / 50% 이하 / - (법정2배 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계획 및 재료 선택
			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간선도로변(용마산로, 봉화산로) : 대지경계선에서 1m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간선도로변(용마산로, 봉화산로)	• 보도형으로 조성	도면참조

나.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간선도로변(용마산로, 봉화산로) 일부	• 차량출입 불허	도면참조

③ 상일동 44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1.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계	변경	변경후		
계	7,390	감) 597	6,793	100.0	
자연녹지지역	7,390	감) 597	6,79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정	변경			
변경	강동구 상일동 445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6,793	• 구역계 조정으로 인한 자연녹지지역 면적 변경	

나.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다.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① 가구 및 획지

구분	가구번호	면적(㎡)	위치	면적(㎡)	비고	
신설	1	6,793	상일동 444-1	1,149	공동개발(지정)	자율적 공동개발구역
			상일동 445	2,136		
			상일동 446-1	1,279	공동개발(지정)	
			상일동 446-2	479		
			상일동 447-2	1,681	공동개발(권장)	
			상일동 462-2	69		

※ 가구면적은 공부상 면적으로 산정

※ 구역전체 통합개발을 위한 주민제안 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하여 제2종일반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함. 단,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시설 확보비율은 순부담 기준으로 25% 이상 해야 함

② 필지 정형화

구분	내용	비고
필지정형화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통해 자율적인 필지 정형화를 권장함	
필지교환 가능성	447-2 ↔ 446-1, 446-2	맹지 방지

- ※ 필지 정형화에 따른 차량출입불허구간의 변경 발생시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함
 ※ 공동개발 지정 필지도 정형화를 위한 필지교환 가능

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	1	상일동 445번지 일대	불허용도 (A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장의사,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제6호 종교시설 중 봉안당 - 제13호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 제17호 공장 - 제18호 창고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 관련시설 중 폐차장, 정비공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제22호 자원순환 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 제26호 묘지관련시설 - 제28호 장례식장
			건폐율	• 20% 이하
			용적률	• 기준 / 허용 / 상한 - 50% 이하 / 50% 이하 / - (법정2배 이하)
			높이	• 4층 이하
			형태	•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질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계획 및 재료 선택
			색채	• 외벽면의 재료, 의장, 색채는 주변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상암로변 : 대지경계선에서 1m - 천호대로 및 상암로 가각부 : 도면 참조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

가. 대지내 공지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전면공지	• 상암로변 • 천호대로 및 상암로 가각부	• 보도형으로 조성	도면 참조

나. 교통처리계획

구분	적용대상	계획내용	비고
차량출입 불허구간	• 천호대로변 • 상암로변 일부 • 도로 가각부	• 차량출입 불허	도면 참조

IV. 관계도면 : 불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 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V.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정도서(관계도면 등 지형도면 포함) 참조

VI. 열람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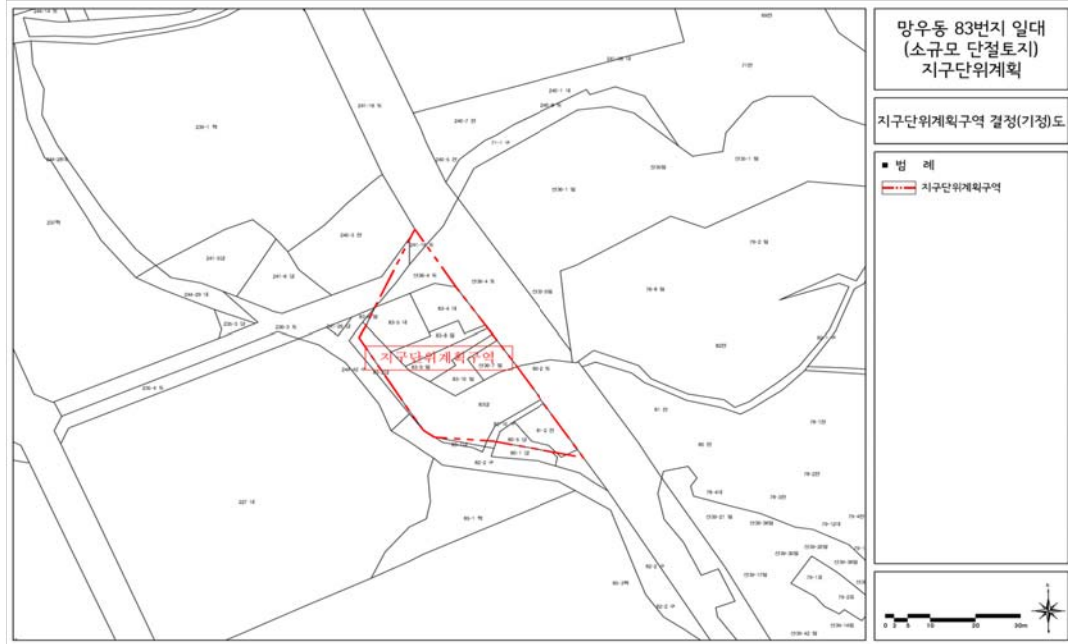
-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2133-8386) 및 중랑구청 도시개발과(☎2094-2173), 강동구청 도시계획과(☎3425-6024), 노원구청 도시관리과(☎2116-3868)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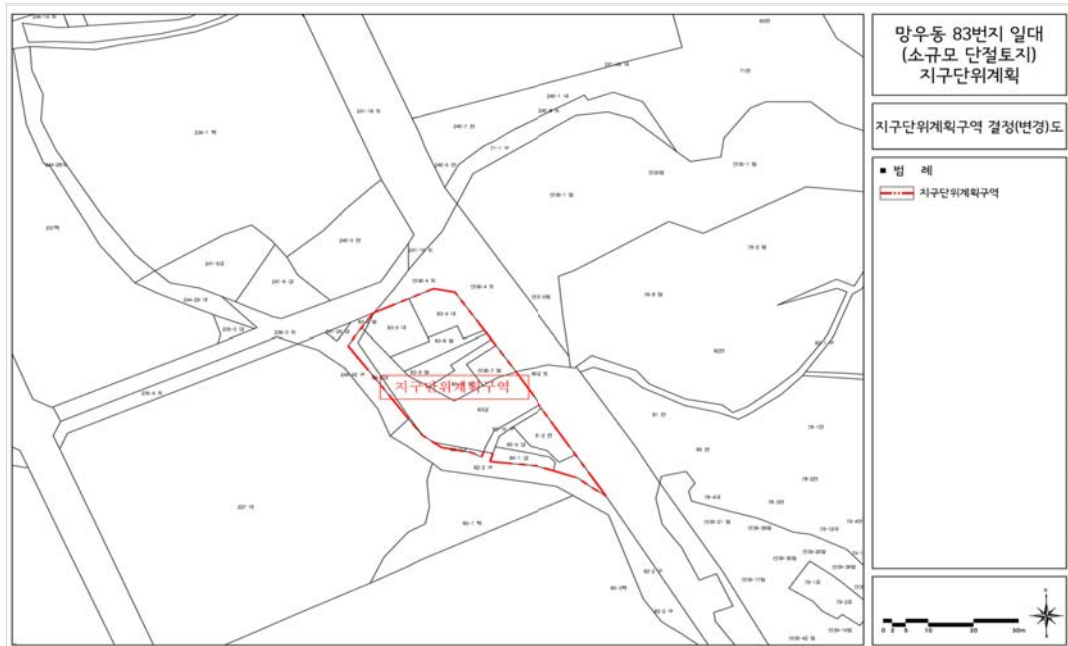
- 망우동 83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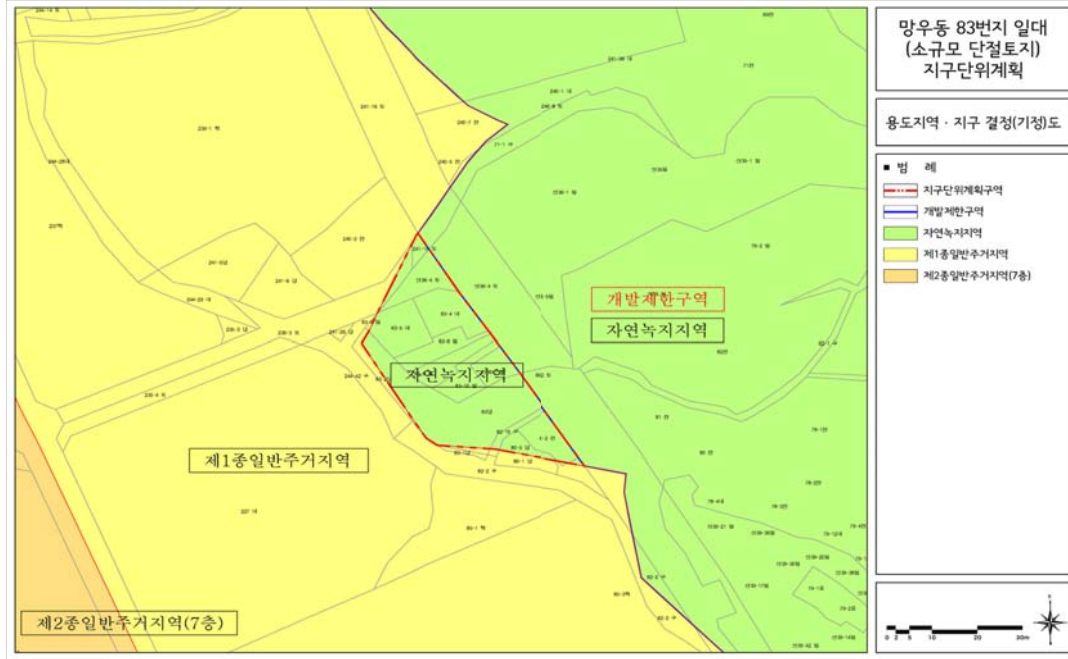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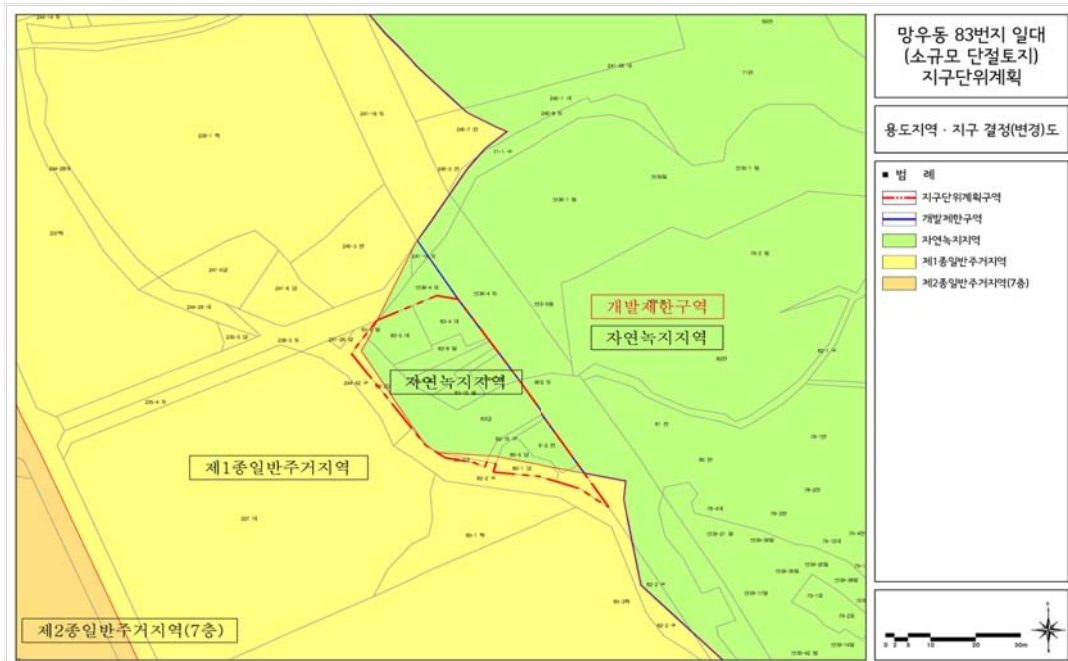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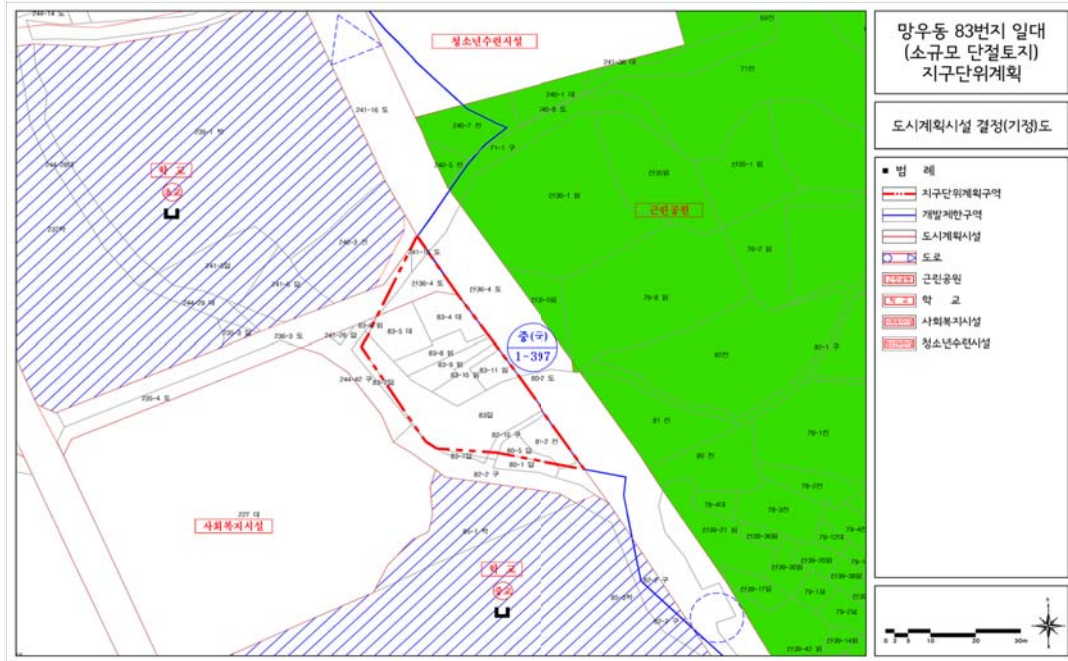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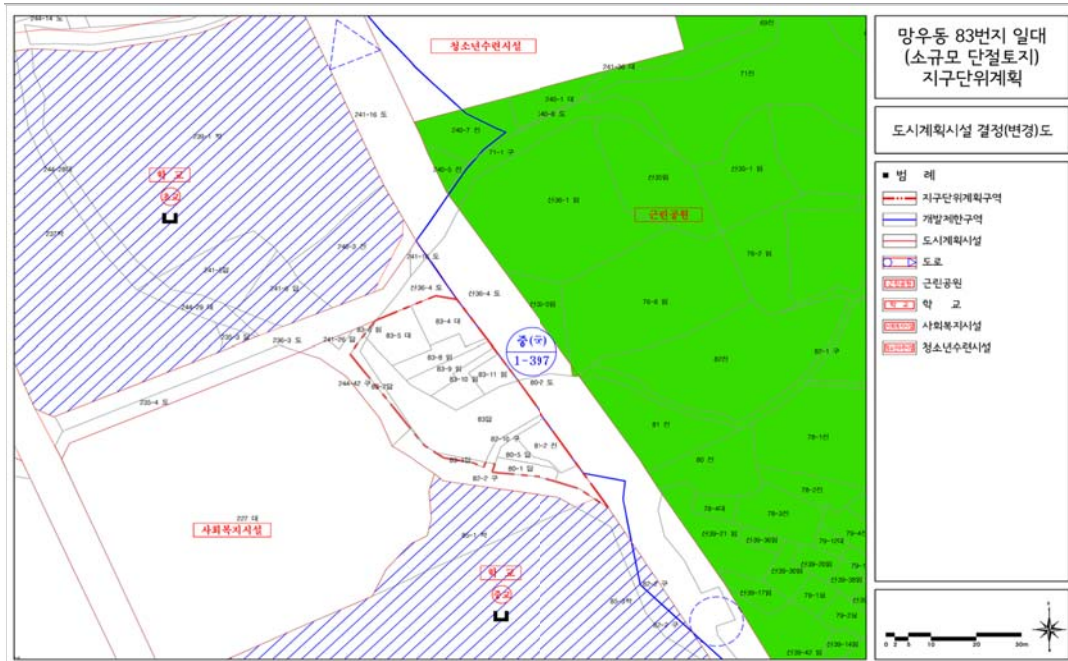


■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도시기반시설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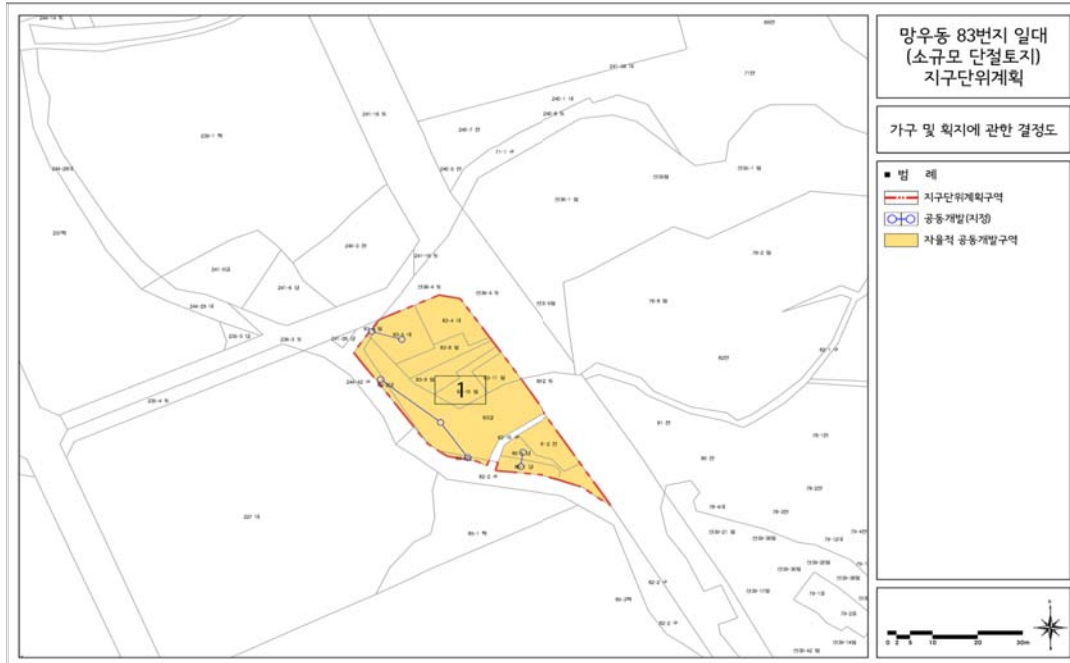


[도시기반시설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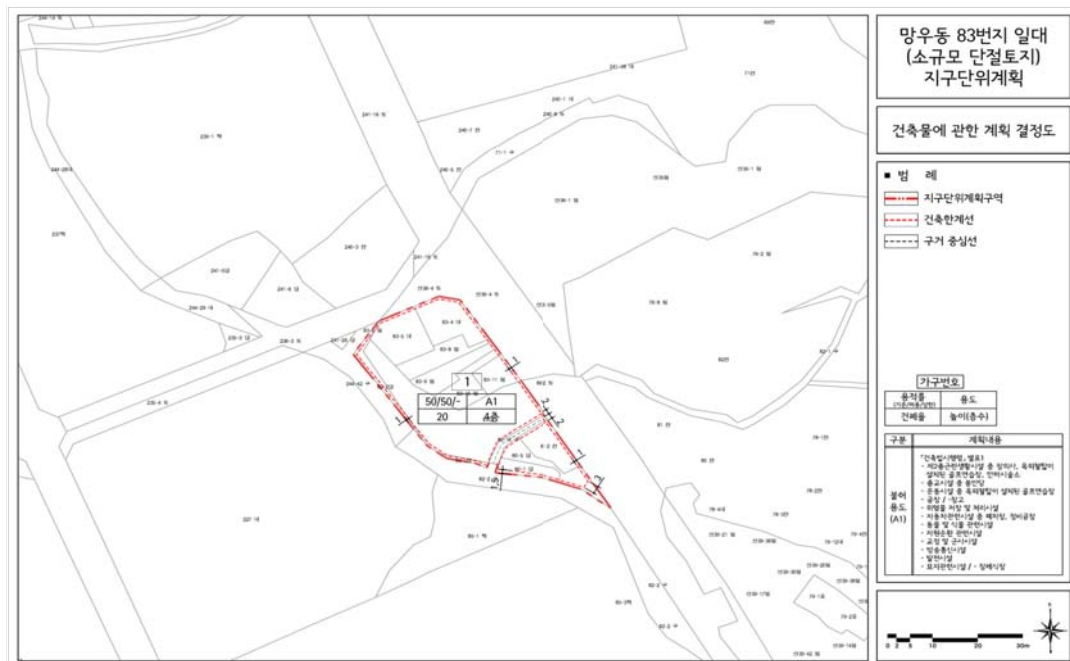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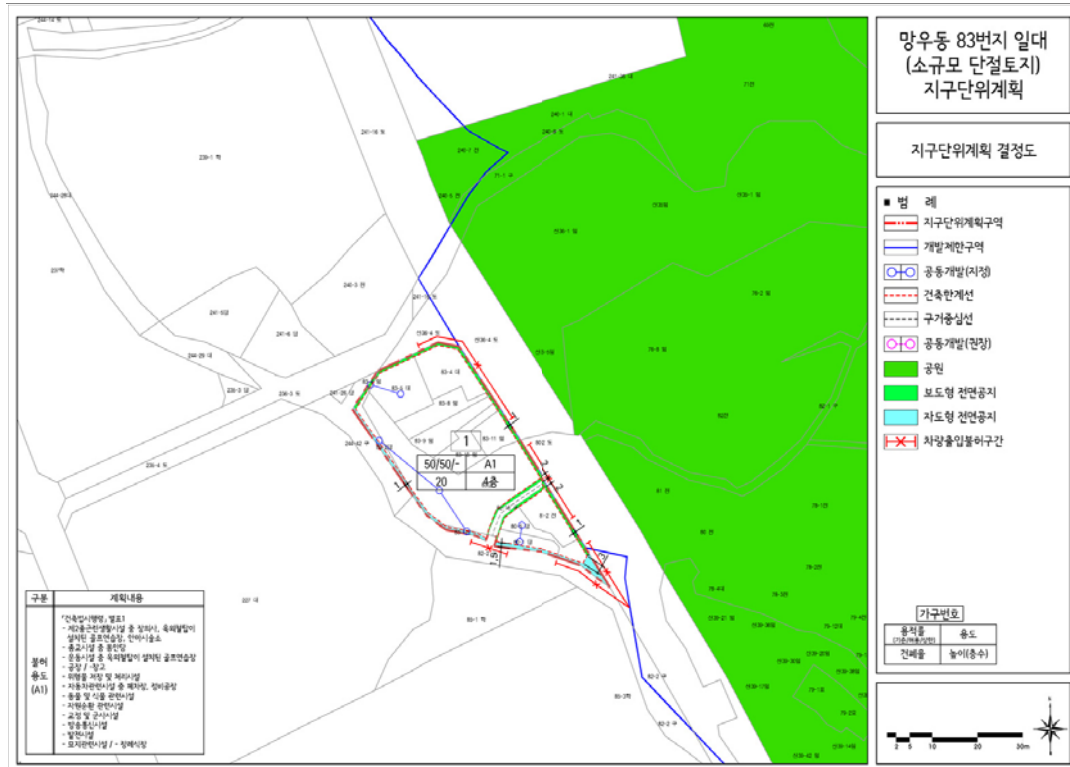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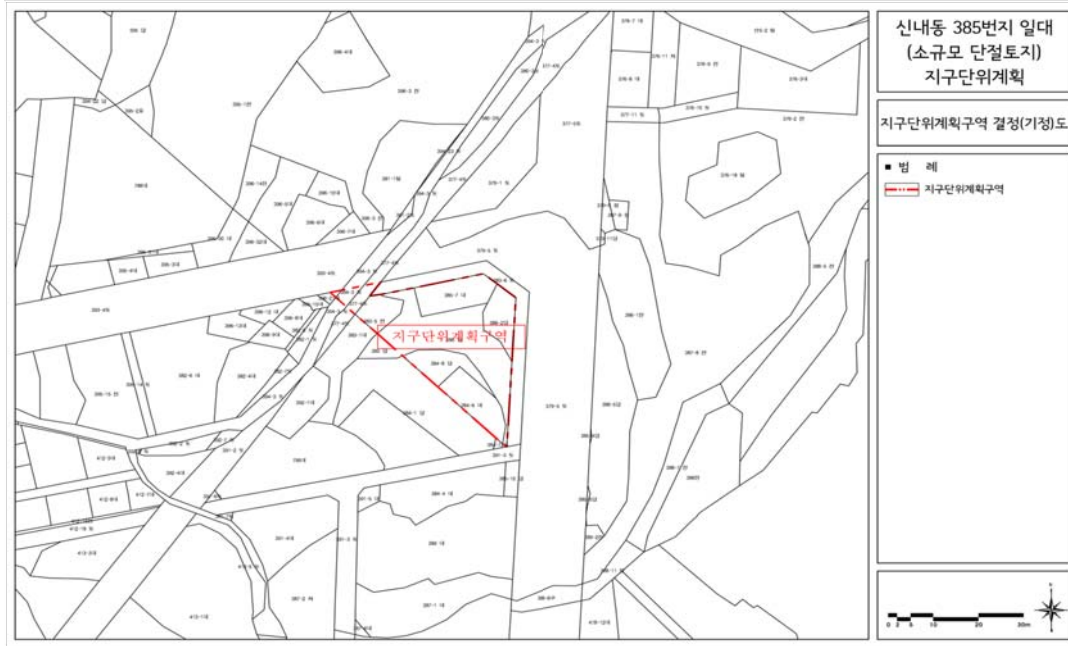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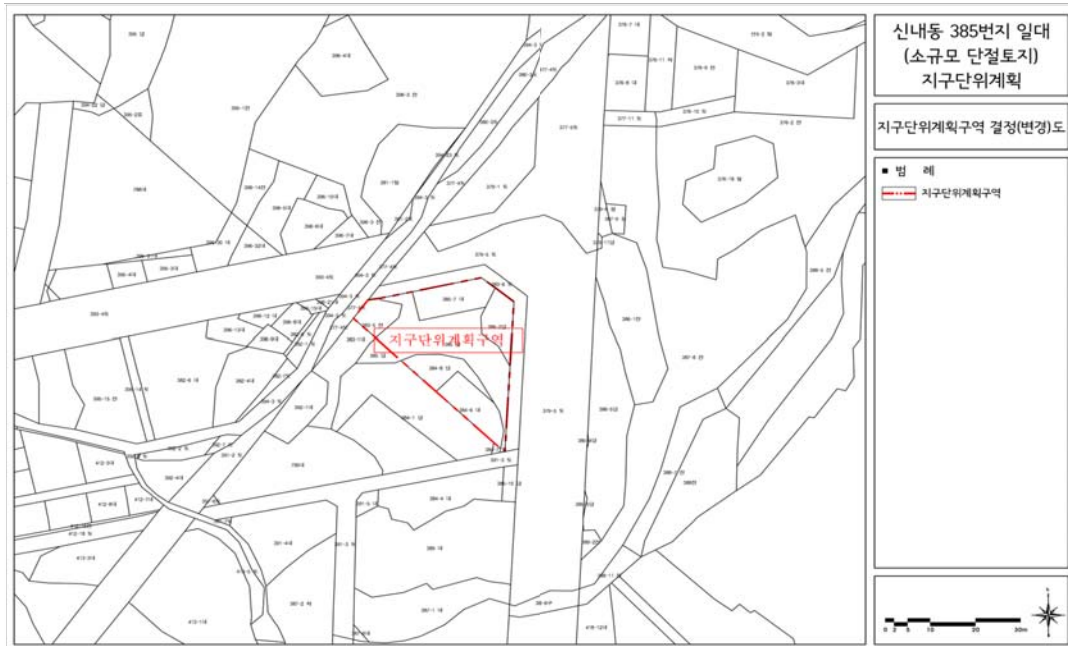
- 신내동 38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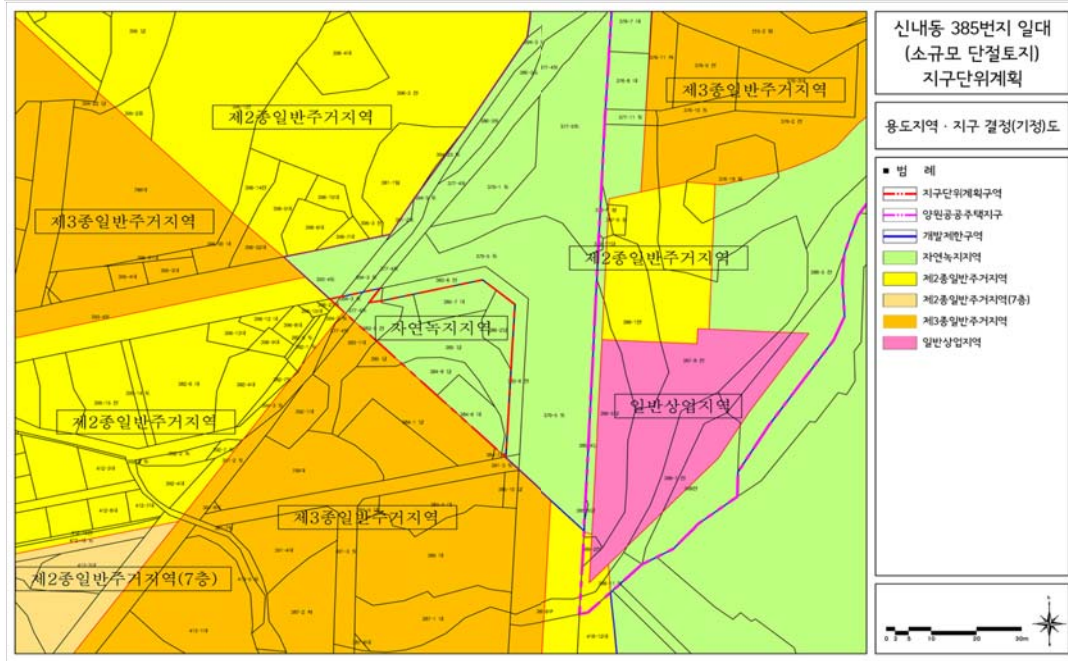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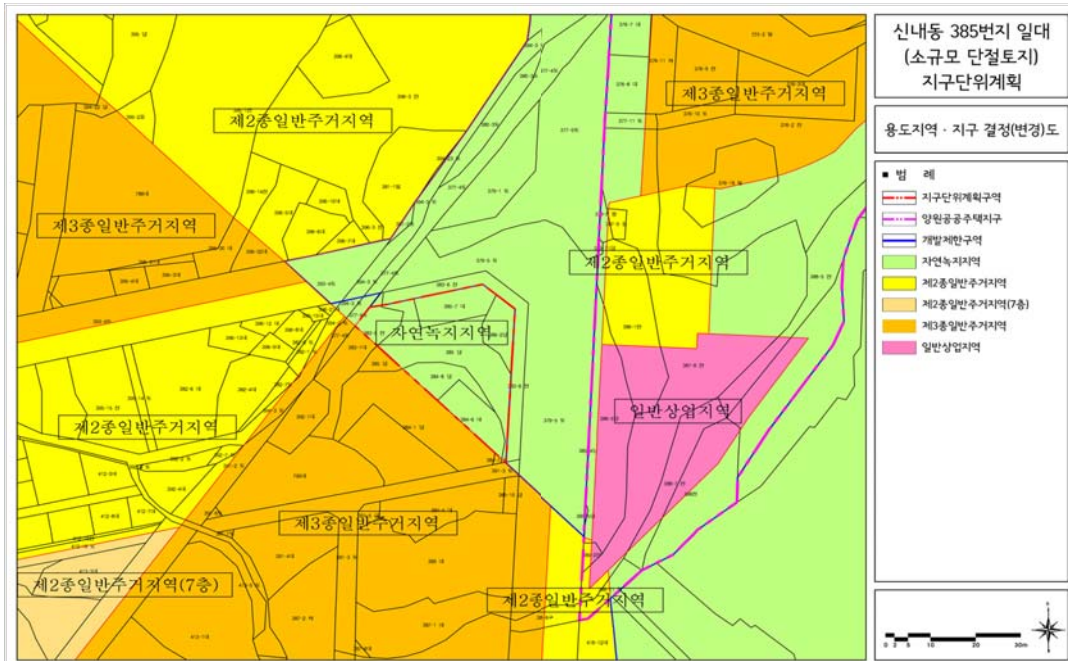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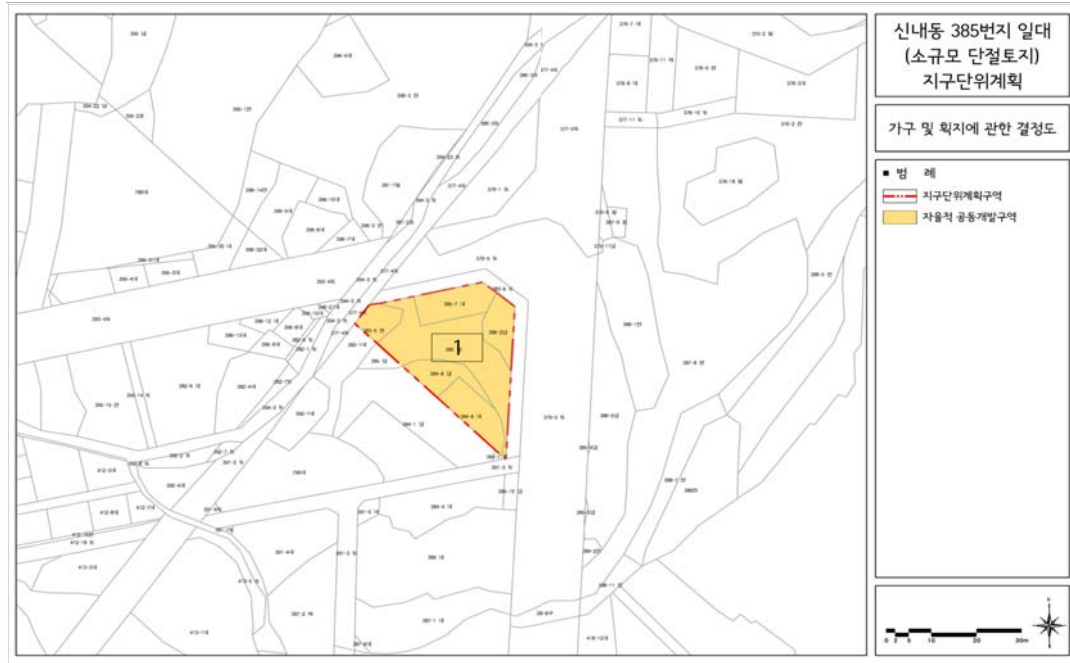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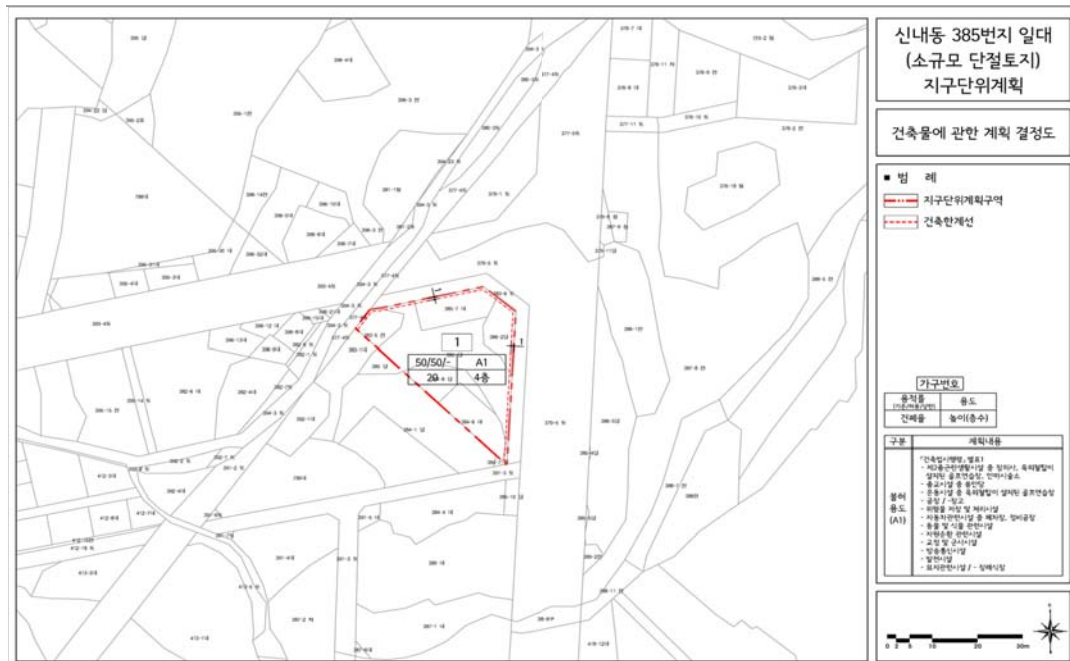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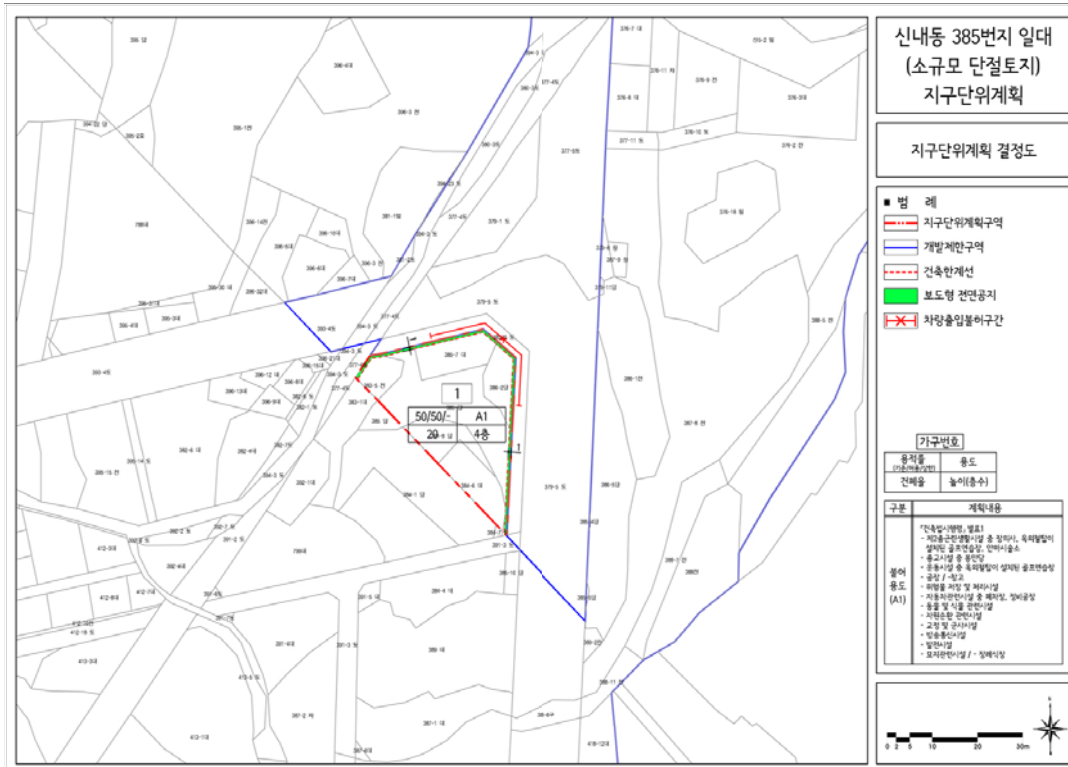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도]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상일동 445번지 일대(소규모 단절토지) 지구단위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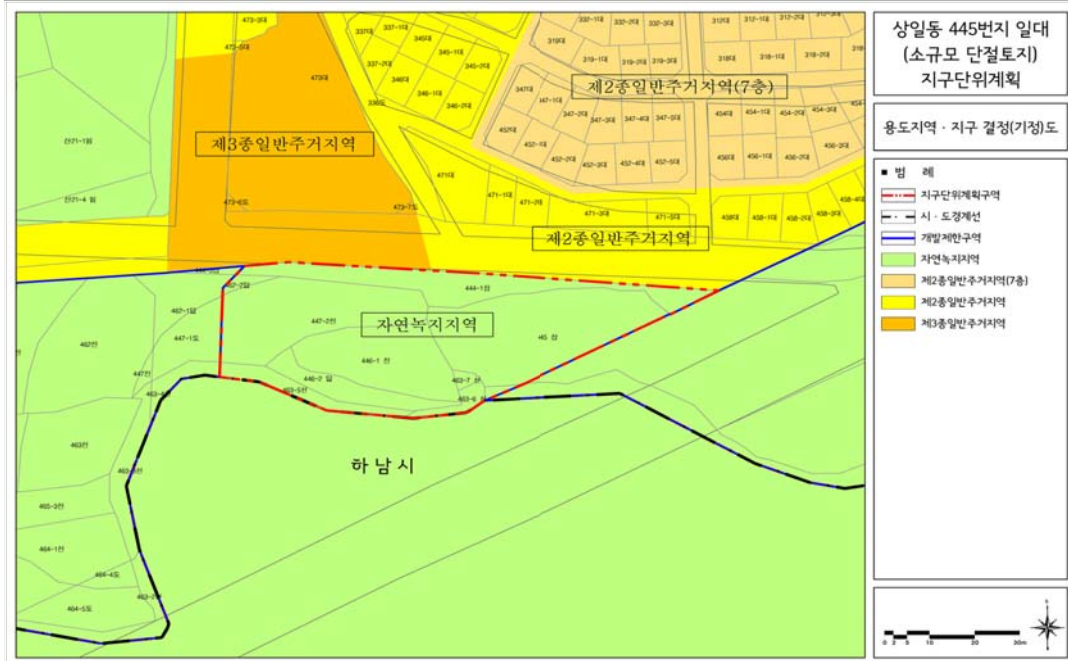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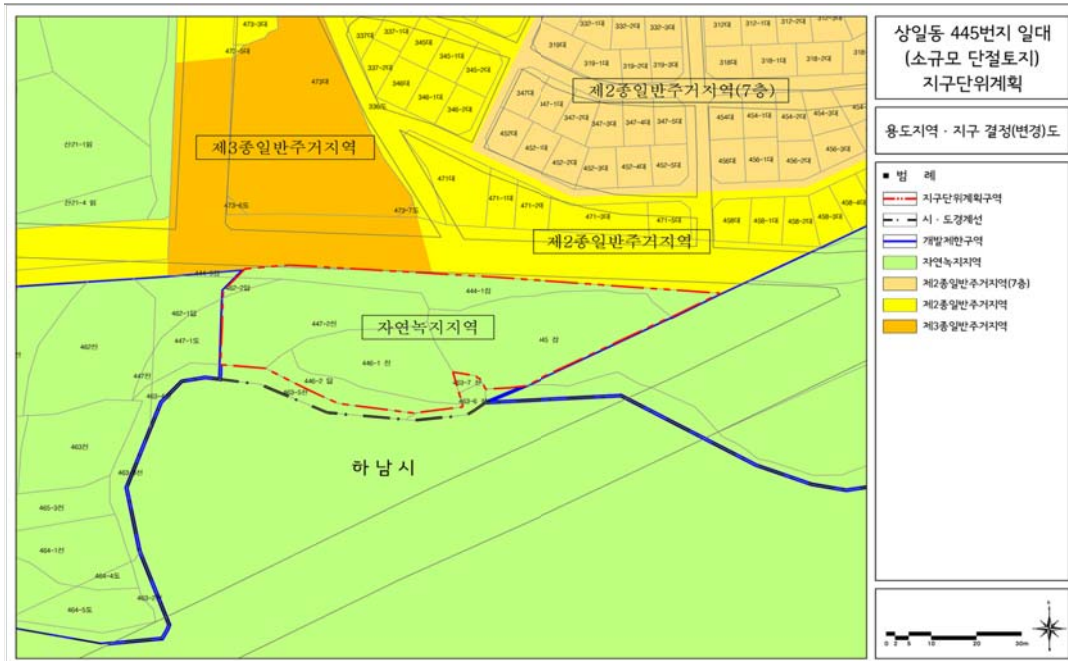


■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용도지역 결정(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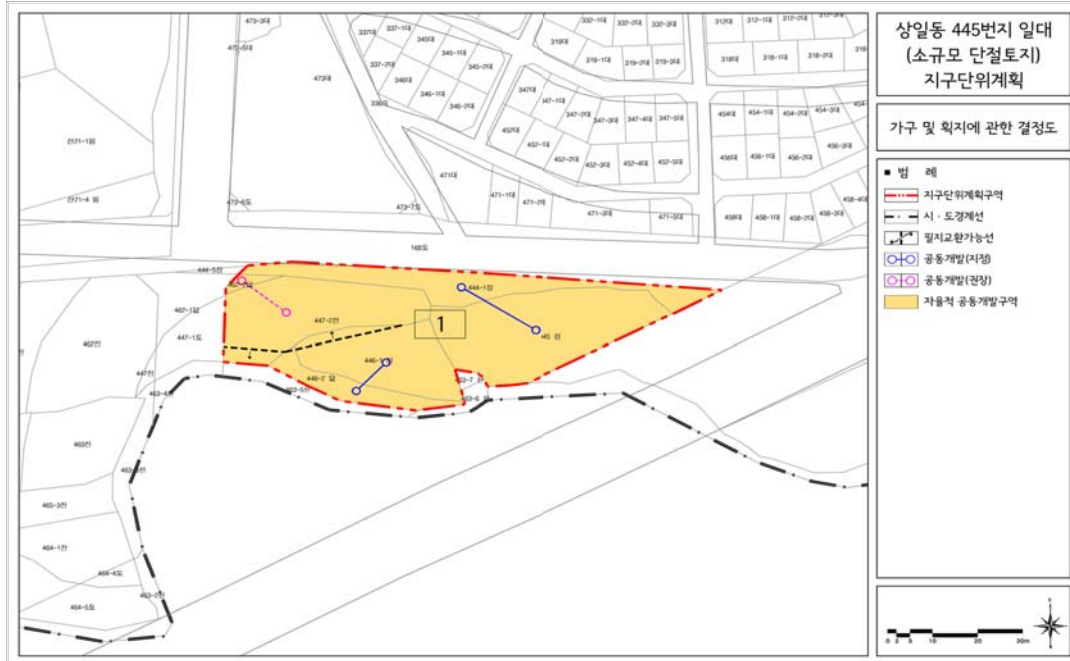


[용도지역 결정(변경)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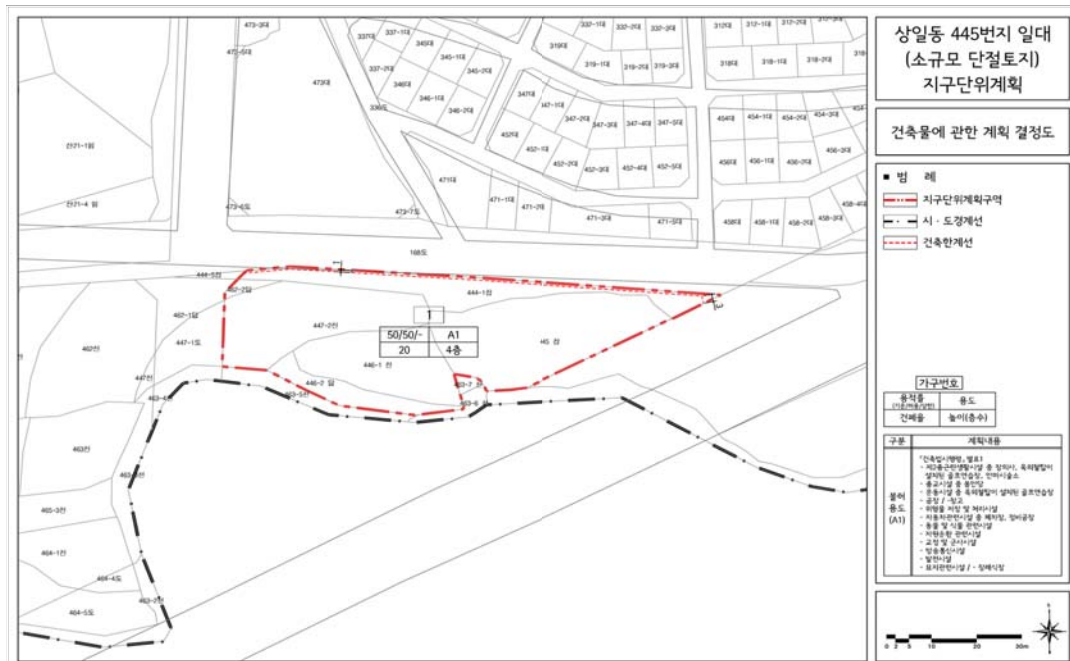


■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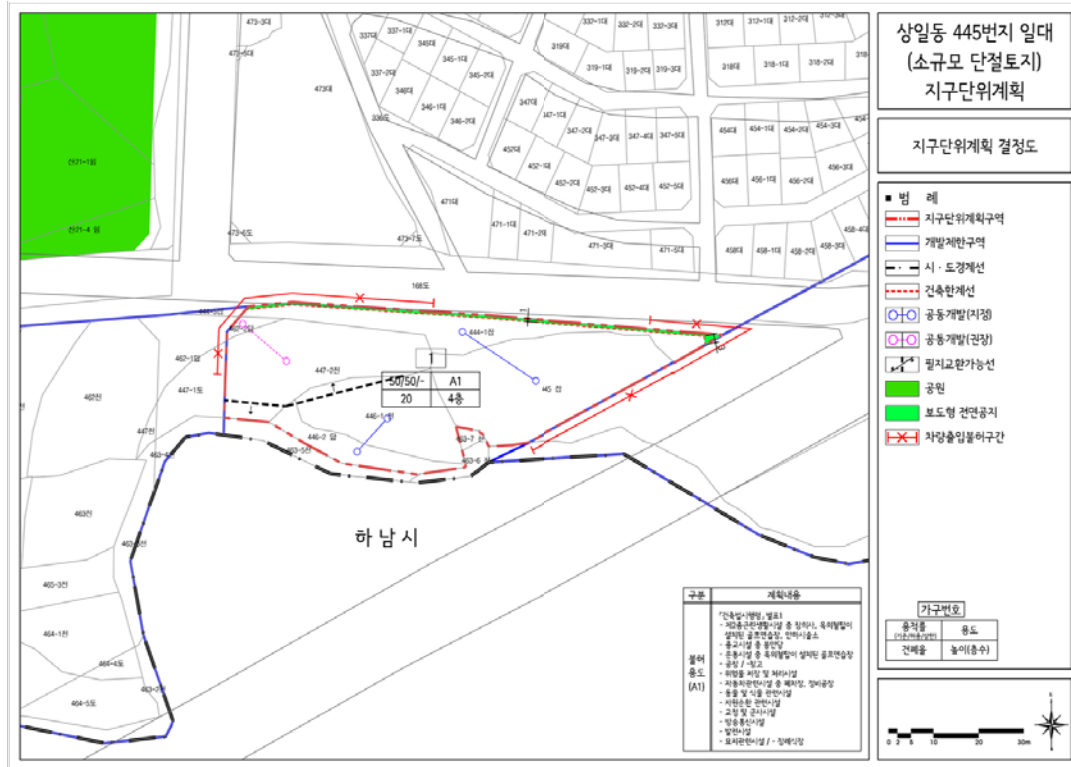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도]



[건축물에 관한 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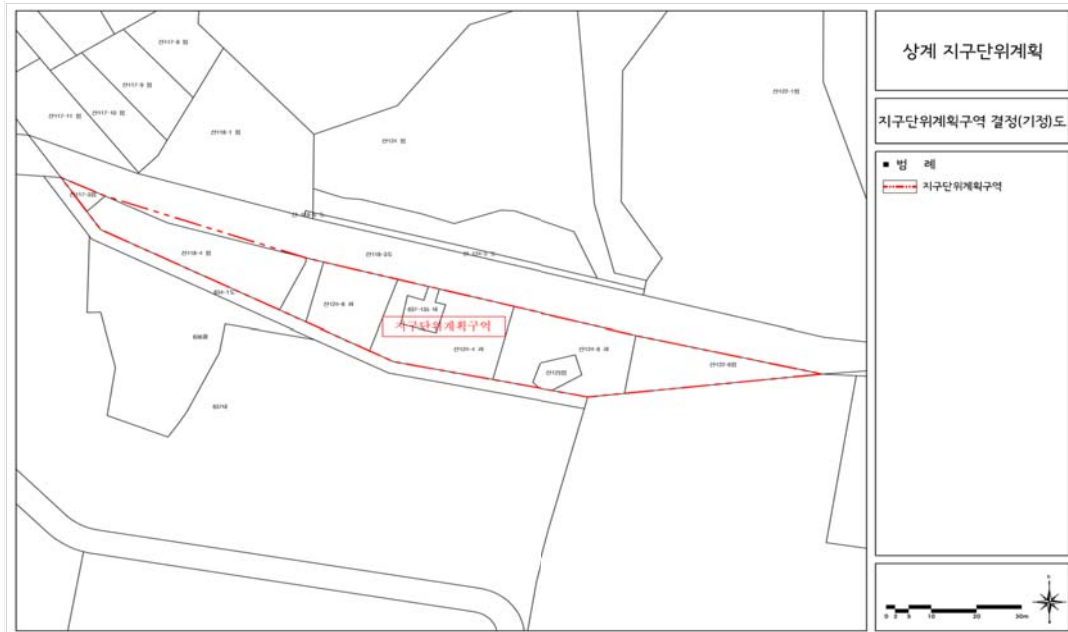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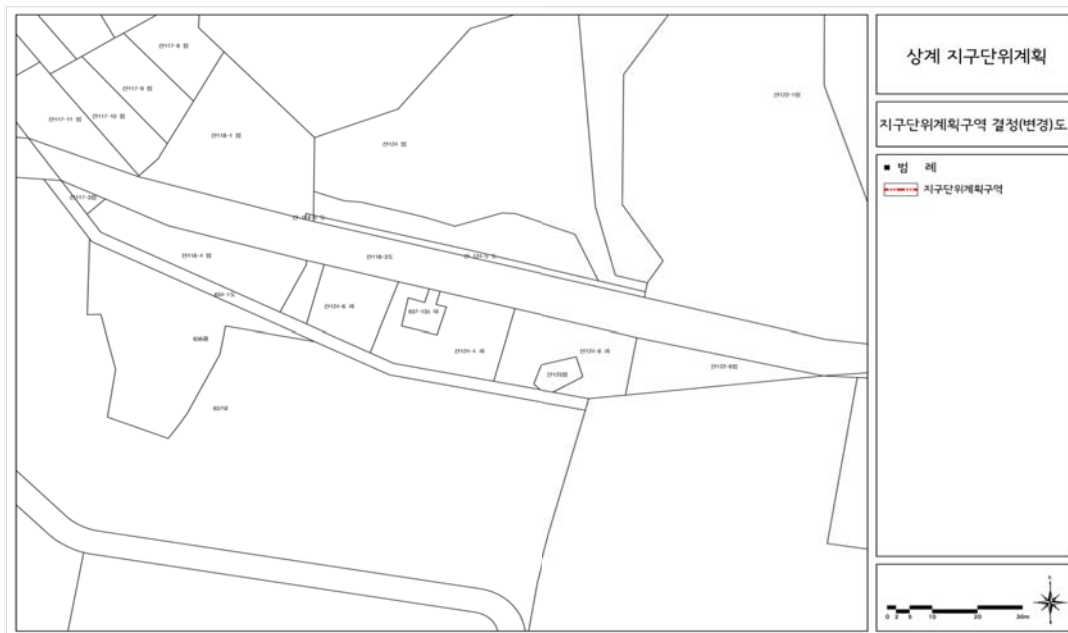
- 상계 지구단위계획 -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기정)도]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5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06(2010.6.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체육시설, 학교, 수도·전기공급설비)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0-1796(2010.10.22)호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99(2010.11.11.)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57(2010.12.16)호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4(2011.10.6)호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9(2011.12.1)호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2012.1.19.)호로 변경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60(2016.2.27)호로 변경고시된 『천호대로(광나루역)확장공사』에 대하여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광진구 구의동 58-15 ~ 광장동 388-10

(아차산사거리~광나루역) <변경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공사

다. 사업의 규모 : 폭 50~88m, 연장 900m(지하차도 580m) <변경없음>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서울특별시장(도시기반시설본부장)

2) 주 소

당초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2동 3층)

변경 :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 플레이스빌딩 12층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당초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변경 : 실시계획고시일로부터 2018년 6월 31일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변경없음>

사. 변경사유 : 사업시행자의 주소변경, 사업의 준공예정일 변경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02-3708-2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6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사업 실시계획 인가고시

1. 건설부고시 제401호(1970.8.14.)로 도시계획시설(양평유수지) 결정(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1769호(2016.9.1.)로 도시계획시설(양평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인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및 영등포구청 치수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불능 등 미 수령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22길 20일원(양평1 유수지 내)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① 종 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사업
 - ② 명 칭 : 양평1 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공사
- 3) 사업의 규모 : CSOs 저류조 처리용량(Q)=46,000m³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① 성 명 : 서울특별시장
 - ②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 2019년 6월 30일까지
-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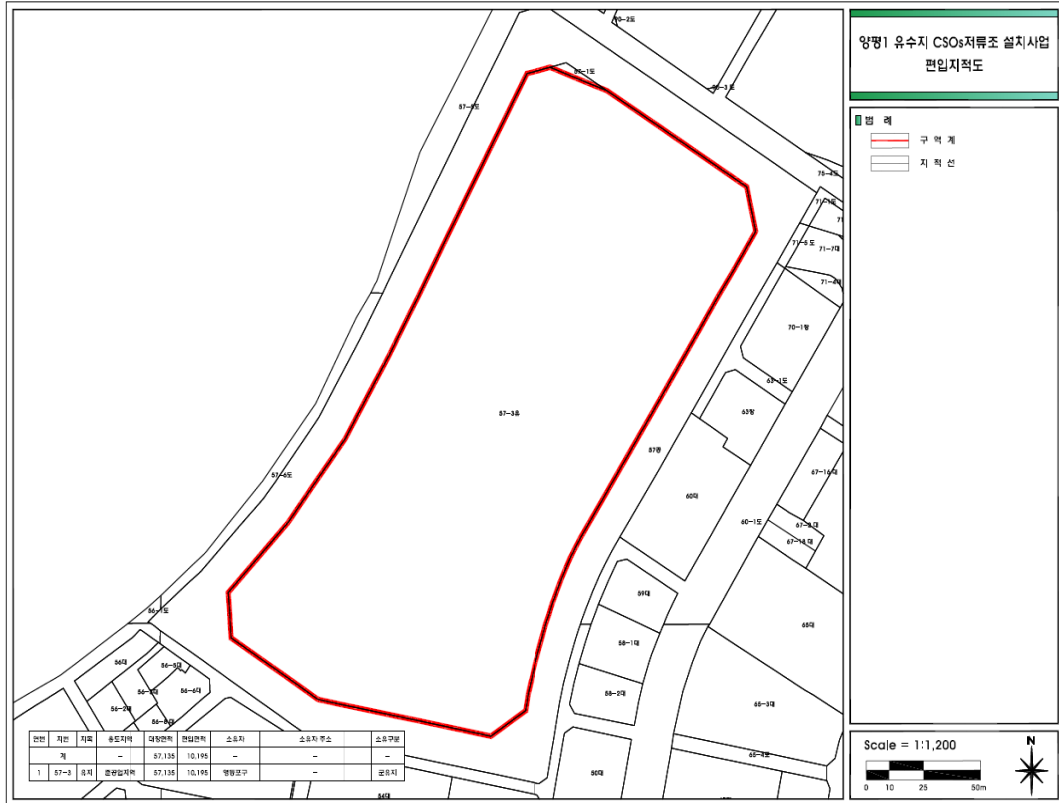
연번	소재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권리	
1	양평동3가 57-3	57,134.5	52,270	유지	영등포구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의거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관리청인 영등포구청에 무상귀속
- 8) 건축 허가,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 건축허가·신고 의제 건축물 현황
 - 건축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57-3

연번	건축물명칭	용도	구조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용적율
1	설비실	관리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2층	451.7㎡	903.5㎡	0.79%/1.58%
2	가설사무소	현장사무실등	조립식 판넬	지상2층	330.0㎡	660.0㎡	가설건축물

-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02-3708-8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양평유수지) 현황도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7호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72호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사업명 :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건설공사
2. 사업주체
 - 성명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개포동 14-5)
3.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4. 사업기간 : 불임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내역 : 불임
6.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7.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전화번호 : 02-2133-7065)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체 주택사업부(전화번호 : 02-3410-7389)에 비치하여 이해관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수요자 맞춤형(연극인 전용) 2호 공공임대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내역

구 분			사 업 승 인 내 역		비 고
			변경전	변경후	
①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186-12번지		
② 대 지 면 적(㎡)			315.00		
③ 건 축 면 적(㎡)			143.12	157.04	
④ 연 면 적 (㎡)			523.01	541.87	
⑤ 건 폐 율(%)			45.43	49.85	
⑥ 용 적 률(%)			145.6	151.12	
⑦ 주택 규모	동수 및 층수		1동, 지하1층, 지상5층	1동, 지하1층, 지상5층	
	주택 형별	국민임대	전용 16㎡ : 10세대 전용 32㎡ : 4세대	전용 16㎡ : 12세대 전용 32㎡ : 3세대	
		계	총 14세대	총 15세대	
⑧ 사 업 기 간			2016. 9월 ~ 2017. 3월	2016. 12월 ~ 2017. 5월	
⑨ 부대 복리 시설 현황	기타집회장 (대본리딩룸, 공용세탁실)		64.37㎡	64.37㎡	
	기타집회장 (커뮤니티 룸)		49.38㎡	49.38㎡	

<단위세대면적 변경전>

⑪ 단위 세대 면적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국민임대	16형	10	15.74	7.00	22.74	6.32	29.06
		32형	4	31.48	13.99	45.47	12.64	58.11

<단위세대면적 변경후>

⑪ 단위 세대 면적	구분		세대수	전용	주거공용	공급면적	기타공용	계약면적
	국민임대	16형	12	16.41	7.22	23.63	6.47	30.10
		32형	3	32.82	14.42	47.24	12.98	60.22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48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111호(2005.5.6.)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학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결정 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으로, 학교설립계획 취소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학교)을 변경결정(폐지)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학교	초교	성동구 성수동1가 5-10 일대	4,723	감)4,723	0	2005.5.6. (서고시 제2005-111호)	준공업지역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시설명	변경 사유	비고
①	학교	· 서울시 교육청 요청으로 결정된 미집행 학교에 대하여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학교)을 폐지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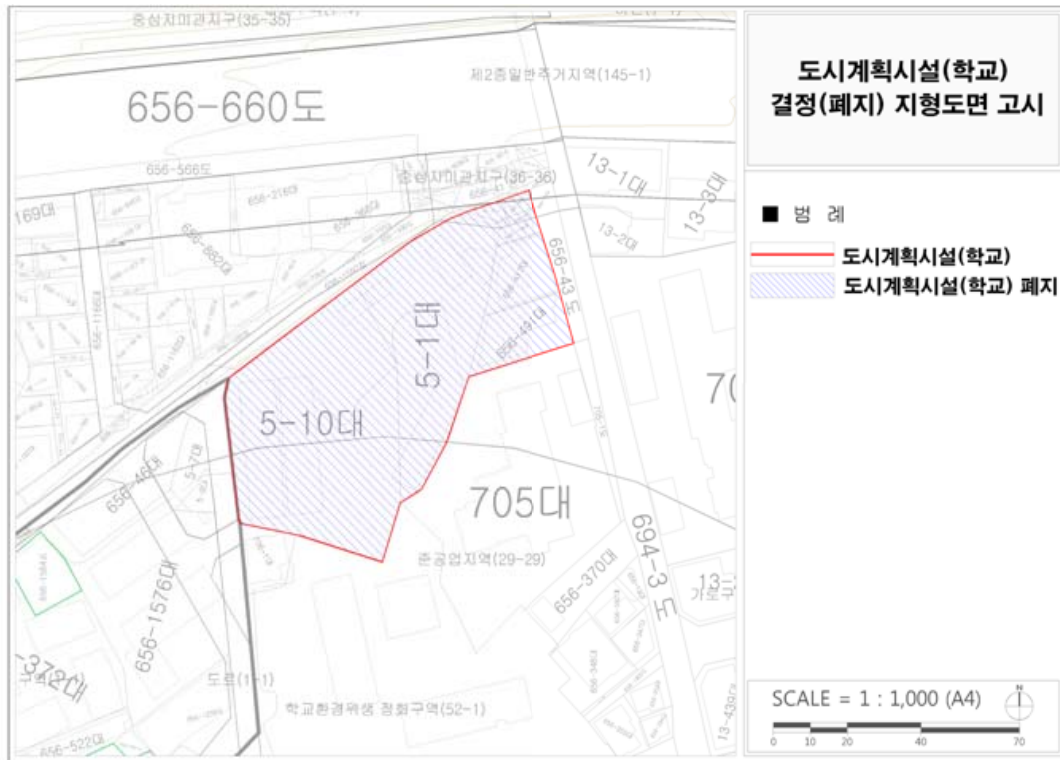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도시계획시설(학교) 변경결정 도면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 붙임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4.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청 시설계획과(☎ 2133-8412) 및 성동구 도시계획과(☎ 2286-5554)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
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폐지)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25호

2016년도 제19차 건축물미술작품 설치계획 심의결과 공고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제19차 서울특별시 미술작품 심의회」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장

- 가. 심의일시 : 2016. 10. 20.(목) 14:00 ~ 17:00
 나. 심의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5층 회의실
 다. 심의작품 : 총 13건 20작품 (조각 15점, 회화 5점)
 라. 심의결과 : 승인 16작품, 부결 4작품
 마. 작품별 심의결과 : 별첨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과(☎ 02-2133-2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1-1	강서구 마곡도시개발 사업지구13번지	조각	아침을 여는 연주회	조건부 ○		작품특성상 사후관리에 유의할 것
1-2		조각	발아(發芽)	○		
2-1	강서구 마곡사이언스타	조각	Montage-Flower	○		
2-2		회화	Montage-Woman		○	패러디 작품을 공공작품으로 설치하기에는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부적절함
3-1	서초구 서초푸르지오써밋	조각	Skin of Time	○		
3-2		조각	동넉		○	주거공간 및 어린이집에 설치될 작품으로는 음산한 느낌이 있으므로 부적절함
4	강서구 르시엘 주상복합	조각	LOVE 221+1		○	작품에 비해 고액임
5	금천구 가산미소지움	조각	공존	조건부 ○		화강석 구름모양의 조형이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각을 다듬을 것

2016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16년 제19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의결합니다.						
연번	건물명	종류	작품명	심의결과		사유 및 의견
				승인	부결	
6	강서구 마곡 보타닉 비즈타워	조각	"첫출근"	○		
7	마곡지구 C2-1 근린생활 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	조각	Happiness Sheep	○		
8	영등포구 더하우스 소호	조각	향기로운 염원		○	제작공정에 비해 고액으로 보여짐
9	강서구 동익 드 미라벨	조각	LOVE-love	조건부 ○		하단 하트모양조형의 색이 다소 다채로움 으로 무채색(단색)으로 통일 시킬 것
10-1	강서구 힐스테이트 예코동의	회화	나무사람 그리고도시	○		
10-2		회화	바람의 울동	○		
10-3		조각	달빛에 물들다	○		
11-1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신청사	조각	DIKE	○		
11-2		회화	불국설경	조건부 ○		연질의 재료이므로 유지관리에 유의할 것
11-3		회화	통로 Un passage	○		
12	강서구 마곡나루역 캐슬파크	조각	피어나는시간 Blossom Time	○		
13	동대문구 현대썬앤빌딩계	조각	먼저할일부터	조건부 ○		작품명판을 우측 바닥에 매립형으로 설치 할 것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27호
종합공사시공업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혐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청문)를 법인의 본점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공고기간 : 2016.11. 3. ~ 2016. 11. 16.
2. 처분사전통지 사항

업체명 (대표자)	업종 및 등록번호	소재지	위반내용	예정된 처분내용	청문실시		법적 근거
					일시 및 장소	주재자	
제이엠월드(주) (서장원)	건축공사업 01-0561	서울시 강서구 남부순환로19길 25, 1층	등록사항신고 (주기적)불이행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 불응	등록말소	2016.11.22. (화)14:00 시설안전과 청문실	시설안전과 주무관 김건로	법 제83조 제7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우리시(시설안전과)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시설안전과 ☎(02)2133-82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41호
도시공원(서울숲) 관리위탁 공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공원을 관리위탁하고, 같은 법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1. 건 명 : 도시공원(서울숲) 관리위탁
2.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3. 위탁내용

수탁관리자		(재)서울그린트러스트 대표 양병이
공원의 종류 및 명칭		서울숲(서울숲근린공원, 독섬근린공원)
위탁사항	위 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섬로 273 일대
	면 적	480,994㎡
	규 모	문화예술공원, 자연생태숲, 습지생태원, 곤충식물원 등
	기 간	2016.11.01. ~ 2018.12.31.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공원녹지정책과(☎02-2133-20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2144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취소 공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였기에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조 합 현 황			취소이유	취소근거	취소일
인가번호	조합명 (이사장)	소재지(정관)			
2009-5	국민의료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서동원)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32동 332호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에 해당하는 규정 위반	소비자생활 협동조합법 제82조제1항제5호	2016.10.26.

※ 문의 : 서울특별시 민생경제과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전화 2133-5364)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47호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열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사업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장

가. 열람 기간: 2016. 11. 4. ~ 2016. 11. 17.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나.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서울시청 임대주택과 역세권사업팀(☎02-2133-4934)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1,556.3	-	1,556.3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168.6	감)1,168.6	-	-	
일반상업지역	387.7	증)1,168.6	증)1,556.3	100.0	

2)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①	강남구 논현동 202-7번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1,168.6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함.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1) 지구단위계획구역명: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결정 사유
			기 정	증 감	변 경	
신설	강남구 논현동 역세권 청년주택(준공공 임대주택) 지구단위계획구역	강남구 논현동 202-7	-	증)1,556.3	1,556.3	청년층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역세권 2030청년주택 건립을 위해 강남구 논 현동 역세권 청년주택 지구단위계획구 역을 신설함.

3)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용도 계획	불허용도 (A)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단, 주거복합 제외) ·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격리병원, 요양병원 · 운동시설 중 옥외철타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 위락시설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 장례식장	
	권장용도 (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의료시설 중 병원 ·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나) 건축물의 밀도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폐율	80% 이하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 원에 관한 조례」 적용
용적률	· 기본용적률: 680% 이하 · 상한용적률: 법정용적률 이하	
최고높이	· 최고높이 80m 이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구역 (봉은사로)

다) 용적률 완화항목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완화내용	비 고
공공 기여율	공공시설 등 설치·제공 비율	· 공공기여율 25%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설치 및 제공	기본용적률 680% 부여	모든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주택 건설 기준	비주거비율	· 상업지역의 용도용적제 미적용 - 주거 : 비주거 = 8 : 2 적용		
	주택규모	· 공공임대주택 : 전용 39㎡ 이하 · 민간임대주택 : 전용 49㎡ 이하		
건축물 형태	21세기 미래형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정책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커뮤니티 지원 시설의 설치계획, 에너지효율 건축물, 친환경 건축물 중 2가지 사항 이상 의무적으로 이행		

라) 상한용적률 산정기준

구 분	상한용적률 산정식	비 고
신 설	$\text{기본용적률} \times (1 +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lpha)$ ○ α = 순부담공공시설부지면적(㎡)/공공시설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 가중치 = 공공시설제공부지용적률(%) / 사업부지용적률(%) ※ 순부담 공공시설 부지면적: 공공기여 의무비율을 초과 하여설치하는 공공시설 부지면적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적용

4)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건축한계선	· 봉은사로변: 건축한계선 3m · 이면도로변: 건축한계선 3m	지침도 참조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봉은사로변: 전면부	

마.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48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상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소		
이상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 **	일시 : 2016.10.09 11:20 장소 : 은평구 수색동 수색로 이마트건너편 내용 : 높이 4.28m, 0.28m 초과	과태료 3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제출 안내

가. 의견제출 기한: 2016. 11. 28.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준용), 의견제출시 증빙서류와 함께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 또한,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제출이나 자진납부가 없을 경우 도로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바. 의견제출처

-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양대로203(상암동) 서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02-300-8347, 팩스번호: 02-300-8337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49호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자에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대상자와 연락도 되지 않아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1. 건 명 : 차량운행제한위반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1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대 상 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예정된 처분 내용
성명	주 소		
안주찬	인천광역시 서구 웃우물로26번길 ***, ***호 (석남동)	일시: 2016-08-30 15:13 장소: 행주대교 북단 과적검문소 차량: *****5962 내용: 제한 축하중 1.35t 초과, 2회	과태료 70만원 부과

4.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의견진술 안내
 - 가. 의견진술 기한: 공고 종료일 다음 날로부터 20일
 - 나.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서식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준용), 의견진술 시 의견진술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다. 또한, 의견진술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라. 의견진술 기한 내에 의견진술이나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진술 기한 내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바. 의견진술서 제출처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237(마곡동) 강서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 전화번호 : 02-2657-7922, 팩스번호 : 02-2657-7950
 - 전자우편 : skyblue7@seoul.go.kr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6-2153호

도시관리계획[독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82호(2011.7.7.)’로 결정된 독점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8,400	—	148,400	100.0	—
주거지역	소 계	139,086	—	139,086	93.7	—
	제1종일반주거지역	24,800	감) 22,145	2,655	1.8	—
	제2종(7층)일반주거지역	26,903	감) 26,903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2,363	증) 48,387	60,750	40.9	—
	제3종일반주거지역	13,791	증) 661	14,452	9.7	—
	준주거지역	61,229	—	61,229	41.3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9,314	—	9,314	6.3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치	용도지역		면적 (㎡)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	성수동1가 685-429번지 일대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2,145	지역특성이 반영된 건축물 유도를 위한 용적률 체계 수립 및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화를 고려하여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
변경	성수동1가 668-69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26,903	
변경	성수동1가 656-551번지 일대	제2종(7층)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661	성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나눔공 유센터 부지로 지역 내 필요한 주민공동 시설 도입을 위한 용도지역 조정

-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변경없음
- 3)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 장소 비치도서 참조)
- 나. 열람기간 : 2016.11.3. ~ 11.17.(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 다. 열람 장소 및 의견제출 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02-2133-8386),
성동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02-2286-5561)
- 라. 관련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도서로 같음)

서울시교육청공고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일반경쟁 재공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약정기간이 2016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 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2017. 1. 1. ~ 2020. 12. 31.(4년)
3. 신청자격 :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른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1금고(단일금고, 특정기금 포함)
5. 신청절차
 - 가. 금고지정 신청에 관한 설명회 개최
 - 1) 일 시 : 2016. 11. 3.(목) 10:00 ~
 - 2)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9층 905호 영상회의실
 - 나. 관련서류 열람 : 2016.10.31.(월) ~ 11.10.(목)
 - 다. 금고지정 신청서 접수
 - 1) 기 간 : 2016. 11. 11.(금) 09:00 ~ 17:00(1일)
 - 2) 장 소 : 서울특별시교육청 8층 교육재정과(☎02-399-9629)
 - 3) 제출부수 :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 4)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6. 기타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심사방법, 약정체결, 비용부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en.go.kr>) 새소식란의 금고지정 일반경쟁 공고를 참고하고, 그밖에 궁금한 사항은 교육재정과(02-399-9629)로 문의바람.

◆ 서울특별시교육청공고 제2016-159호

서울특별시의회 안건 제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교육감

연번	의 안 명	제 출 자	의안번호
1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총무과)	1435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1436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1437
4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관리담당관)	1438
5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학교지원과)	1439
6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40
7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41
8	학교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42
9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43
10	서울특별시교육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재정과)	1444

구 고 시

◆ 용산구고시 제2016-123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9호(2015.8.6)와 용산구고시 제2015-165호(2015.12.17)로 변경결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용 산 구 청 장

I. 결정(변경)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지적현황측량 결과 반영 및 건축물 형태계획에 관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II.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 없음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1	공원	가로공원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번지	1,079.0	감) 2.7	1,076.3	2015.8.6.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공원	• 면적 감소 - A : 1,079㎡ → 1,076.3㎡, 감) 2.7㎡	•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조정

※ 상기시설 외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간시설 변경없음

- 다. 유통 및 공급시설 : 변경 없음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 변경 없음
 마. 보건위생시설 : 변경 없음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④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III.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조서

- ①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 변경 없음
 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 변경없음
 나.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1	공원	가로공원	용산구 한강로3가 65-325번지	1,079.0	감) 2.7	1,076.3	2015.8.6.	

■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1	공원	• 면적 감소 - A : 1,079㎡ → 1,076.3㎡, 감) 2.7㎡	•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조정

- 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사항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획지 결정(변경)조서

구역명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①	한강로3가 65-325번지 일대	4,461.3	증) 9.3	4,470.6	획 지
	-	한강로3가 65-325번지	1,079.0	감) 2.7	1,076.3	공원용지 (기부채납)
	-	한강로3가 65-325번지 일대	663.0	감) 6.6	656.4	도로용지 (기부채납)

■ 변경사유 :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조정

2.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계획 : 변경 없음

나. 건축물 개발밀도 계획

1) 건폐율 : 변경 없음

2) 용적률

■ 기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 적 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단, 2006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공공시설(1,442.2㎡) 보다 추가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800% 이상 가능 (단, 1,000% 이하로 하고 증가량은 $800 \times 1.3 \times$ 가중치 $\times a$ 로 할 것)	•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가중평균 적용 - 기준 : 497.30% 이하 - 허용 : 744.25% 이하 -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추가 기부채납에 대한 상한용적률 823.96% 이하 - 다만, 종상향된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 적용	-
	제3종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61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에 한함)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적용

■ 정정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용 적 률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600% 이하 • 허용용적률 : 80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단, 2006년 6월 14일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 시 제시된 공공시설 (1,442.2㎡) 보다 추가 기부채납 시 상한용적률 800% 이상 가능 (단, 1,000% 이하로 하고 증가량은 $800 \times 1.3 \times$ 가중치 $\times a$ 로 할 것)	• 기준, 허용, 상한용적률 가중평균 적용 - 기준 : 497.30% 이하 - 허용 : 744.25% 이하 - 상한 : 800% 이하 ※ 공공시설 추가 기부채납에 따른 상한용적률은 추가 기부채납 면적에 대하여 $800\% + (800\% \times 1.3 \times \text{가중치} \times a)$ 산식 적용하여 산정 - 다만, 종상향된 지역의 상한용적률은 800% 이하 적용	-
	제3종 ⇒ 일반상업지역	• 기준용적률 : 250% 이하 • 허용용적률 : 610% 이하 • 상한용적률 : 800% 이하		

※ 1.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용적률의 합

2. 상한용적률은 공공시설제공(기부채납에 한함)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적용

- 정정사유서 : 공공시설 추가 기부채납시 상한용적률 적용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부개발계획상 문구 정정

다. 높이 : 변경 없음

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마.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계획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 형태	저층부 형태	- 미관지구에 면한 건축물 1층 전면부 벽면은 50%이상을 투시벽으로 처리 - 미관지구에 면한 건축물의 1층서터는 투시형 서터를 사용		
	1층 바닥높이	기정	미관지구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15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변경	미관지구에 면한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접한 보도/도로와 60cm 이내의 차이로 제한하여 일반인 및 장애인의 진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경사지의 경우, 접한 보도 또는 도로의 높이는 높은 쪽을 기준으로 함) 단, 부득이한 경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변경 가능	
	측면공지 차폐	미관지구에 면한 대지의 측면경계선과 건물사이의 이격거리가 3m미만이고 이격부준이 도로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이격공지는 차폐조경, 담, 문 등으로 차폐하되 건축물의 벽면과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		

구 분		세부개발계획	비 고
건축물의 외관	외벽면의 통일성	• 외벽면의 외장, 재료, 색채에 있어서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	
	1층부 입면	• 1층 개구부 및 1층부 창문은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 • 미관지구에 면하는 대지의 건축물은 개구부가 없는 벽면을 도로에 노출하여선 안 됨. 단, 벽면에 조경, 벽화 등 장식적 처리를 하여 당해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	
건축물의 입면	외벽면 재료	• 고층부 외벽면의 재료는 인접건물 및 동일건물의 저층부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	
	개구부	• 고층부 전면에는 개구부가 설치되어야 하며, 개구부의 형태 및 높이는 인접한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	
옥외광고물		• ‘용산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및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서울시고시2004-158호)’ 기준을 준수	

- 변경사유서 : 전면부와 이면부 레벨차이로 인하여 기 결정된 건축물 형태계획에 따라 건축물 1층 바닥높이 계획시 이면부 동선체계가 매우 불합리하고 1층부 공간 활용에

불리한 측면이 있어 바닥높이 제한을 일부 완화함

3.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가. 대지내 공지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나. 교통치리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다. 친환경요소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라. 공공시설부담에 관한 계획

구 분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	세부개발계획		비고
공공시설 부지 제공율	• 순부담률 : 20.0% 이상 - 대상지 남측 도로 확폭 (B = 12m → 12~13m) - 동측 특별계획구역 연결도로 확폭(B = 7~11m → 11~12m) - 대상지 남측 공원 조성 (B = 20m 이상)	기정	• 순부담률 : 20% 이상 - 계획 : 28.1%(1,742㎡) - 대상지 남측 공원(1,079㎡) 및 도로(663㎡)를 사업시행자가 설치 및 조성하여 공공에 기부채납	※ 기부채납 면적 및 비율은 추후 특별계획구역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변경	• 순부담률 : 20% 이상 - 계획 : 27.9%(1,732.7㎡) - 대상지 남측 공원(1,076.3㎡) 및 도로(656.4㎡)를 사업시행자가 설치 및 조성하여 공공에 기부채납	

- 변경사유 : 분할측량 성과에 따라 면적 조정

IV. 관계도면 : 붙임 참조

-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으로 측량 및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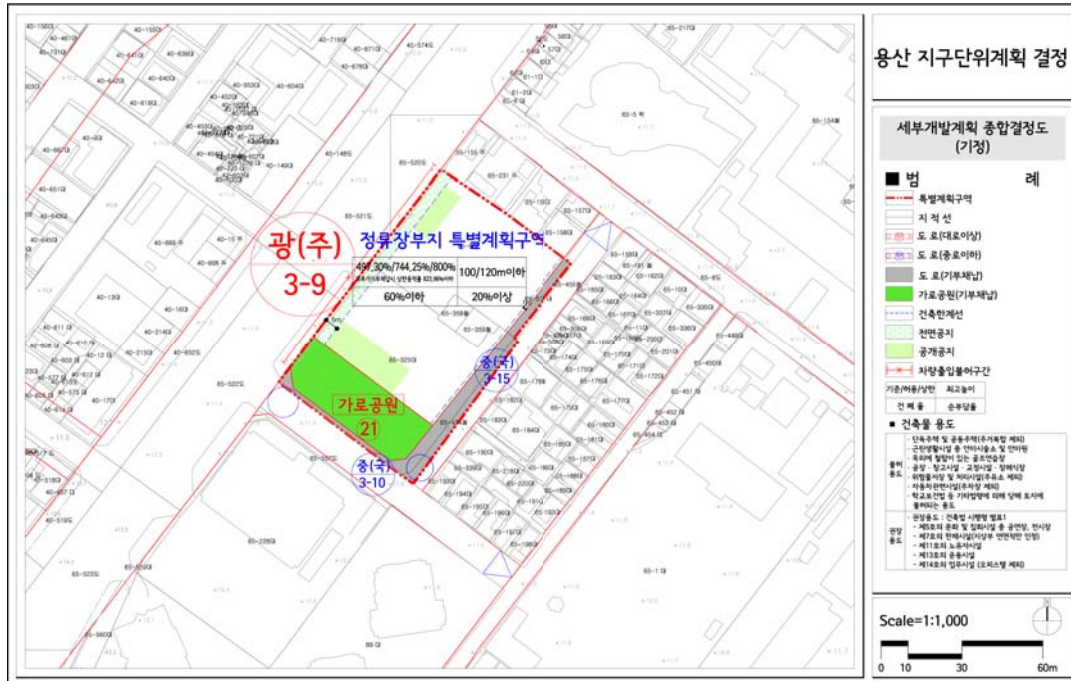
V.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용산구청 도시계획과(☎2199-742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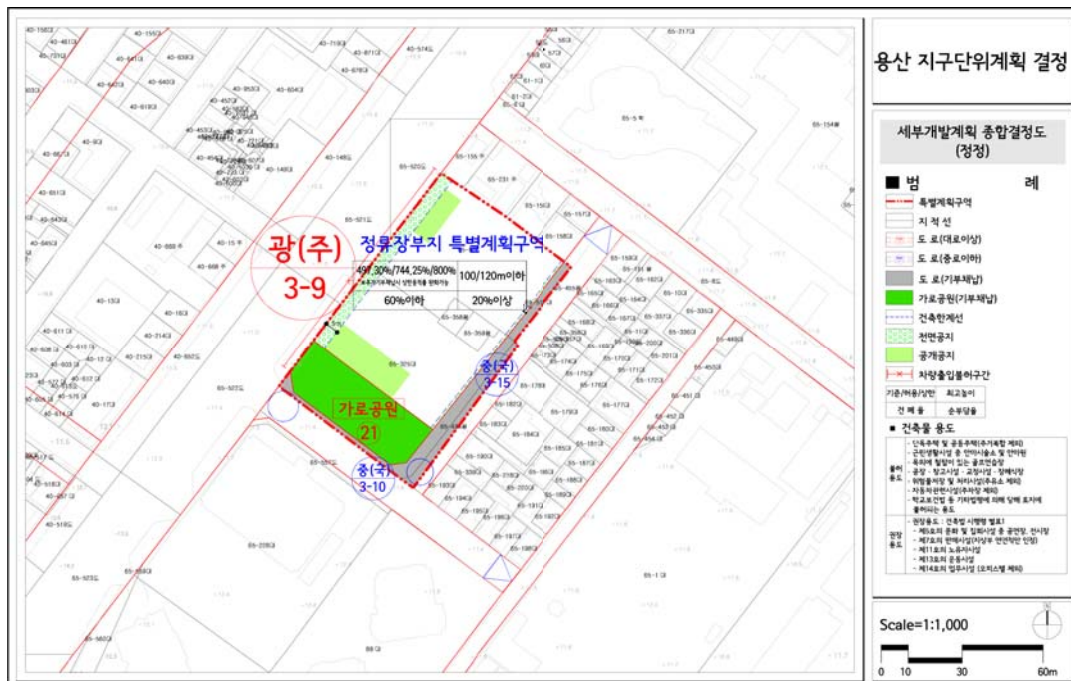
붙임 :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정류장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도면

■ 세부개발계획 결정도

- 기정



- 변경



※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은 도면상 변경 없음

◆ 용산구고시 제2016-128호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건설교통부고시 2000-362호(2001.1.6)로 실시계획인가된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999호 외 3필지 상 용산민자역사에 대하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증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용 산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번지 999호 외 3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용산민자역사)사업

○ 명 칭 : 용산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증축)

다. 사업규모

명 칭	시설규모(㎡)				비 고
	구분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산 민자역사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시설사업	건축면적	57,459.84	증)1,818.11	59,277.95	증축
	연면적	278,105.21	증)63,648.68	341,753.89	
	높이	B3F~10F/55m	증) 8.1m	B3F~10F/63.1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주)현대아아파크몰 대표이사 양창훈

○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999번지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 착수예정일 : 착공신고일

○ 준공예정일 : 착공일로부터 21개월

바.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및 설치비용계획

○ 공중 보행연결브릿지(용산역↔용산호텔)

○ 의무실 및 회의실(지상2층 및 3층)

○ 그랜드케노피, 역내보행통로환경개선

○ 본 사업시행 비용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

사. 그 밖의 사항 : 게재생략

◆ 성북구고시 제2016-150호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6호(2013.11.28.)로 결정되고 성북구고시 제2016-142호(2016.10.20)로 변경 고시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2241-27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도시관리계획(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조서(경미한 사항)

-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 전]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사회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성북동 산9-15 일대	9,025	-	9,025	2010-2-25 (성북구고시 제2010-12호)	성가정 입양원

[변경 후]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사회복지시설	성북동 1-161번지	6,331	-	6,331	2010-2-25 (성북구고시 제2010-12호)	
	사회복지시설	성북동 1-162번지	2,477	감) 5	2,4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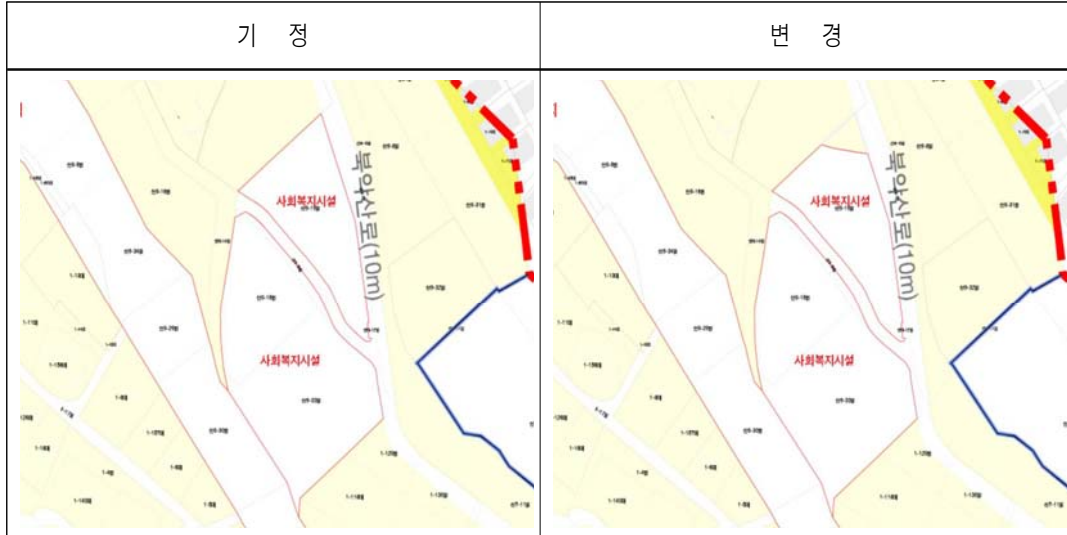
나. 정정사유 : 기 변경된 성북구고시 제2013-89호(2013.8.22.)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사회복지시설)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내용의 반영

다. 관계도면 : 지형도면(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도) 첨부

- 아래의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

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성북동 1-162 일대



◆ 성북구고시 제2016-151호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9호(2015.12.31.)로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의 정비 계획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6-108호 (2016.08.25.)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상월곡동 삼태기마 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및 공공공지)사업

나.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사업의 위치	사업의 규모	최초 결정고시	비고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상월곡동 24-30 ~ 산 7-15	B = 4m L = 32m	서울특별시고시 제205-419호 (2015.12.31.)	도로
	상월곡동 24-319일대	면적 = 176.0㎡		공공공 지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성북구청장

2) 주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사업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2017.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
세 : 따로붙임

※ 변경 사유 : 토지 분할에 따른 토지조서 변경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도시재생디자인과(☎02-2241-279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변경전)

이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24-38	대	99	84	최병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1 씨-3411					
2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임야	874	70	기획재정부	750/874						
					김은양	3/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221	성북구		임류		
					이정수	29/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72					
					이영식	4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노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3 씨-101	근저당권		
3	성북구 상월곡동 24-43	대	132	107	이장호	5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47					
					기획재정부							
4	성북구 상월곡동 24-198	대	30	26	기획재정부							
5	성북구 상월곡동 24-397	대	8	8	민하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85 에이동 301호(장위동, 수정빌라)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변경후)

입원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24-398	대	44	44	최병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1 씨-3411					24-38에 서 분할
2	성북구 상월곡동 24-399	대	40	40	최병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10 코오롱트리폴리스1 씨-3411					24-38에 서 분할
3	성북구 상월곡동 24-406	임야	30	30	기획재정부	750/874						24-319에 서 분할
					김운양	3/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221	성북구		압류		
					이정수	29/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72					
					이영식	4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노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3 씨-101	근저당권		
4	성북구 상월곡동 24-407	임야	40	40	이장호	5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47					24-319에 서 분할
					기획재정부	750/874						
					김운양	3/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221	성북구		압류		
					이정수	29/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72					
					이영식	41/874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19	노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 506-3 씨-101	근저당권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변경후)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권				이 해 관 계 인			비고
					성 명	공유 지분	주 소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이외의권리의 종류 및 내용	
5	성북구 상월곡동 24-401	대	29	29	기획재정부							24-43에 서 분할
6	성북구 상월곡동 24-402	대	78	78	기획재정부							24-43에 서 분할
7	성북구 상월곡동 24-404	대	16	16	기획재정부							24-1980에 서 분할
8	성북구 상월곡동 24-405	대	10	10	기획재정부							24-1980에 서 분할
9	성북구 상월곡동 24-397	대	8	8	민허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 85 에이동 301호(장위동, 수정빌라)					

별첨 조 서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사업의 명칭 : 상월곡동 삼태기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기반시설
 설치사업(도로 및 공공공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 량 (㎡)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1	성북구 상월곡동 24-43외 1필지	건물	벽돌조 시멘트기와 지붕 및 슬레이트 지붕	58.74	주택	송영옥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197				
2	성북구 상월곡동 24-43외 1필	건물	세멘 블록 세멘 기와	40.44	주택	임민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8				미등기
3	성북구 상월곡동 24-43	건물	세멘조	33.058	주택	염익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198				기존 무허가
4	성북구 상월곡동 24-38	건물	세멘조	72.7276	주택	임민복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24-38				기존 무허가

위 치 도



◆ 노원구고시 제2016-102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보상】

1. 문화재청고시 제2002-14호(2002.3.9)로 문화재 지정 결정되고, 문화재청고시 제2008-160호(2008. 12. 10)호로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보호)구역 일괄조정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된 사적제440호 서울 초안산분묘군 보호구역내에 편입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 23-13 외 2필지에 대한 사유지 토지보상을 대하여 노원구공고2016-786(2016.10.6)호로 열람 공고 완료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 토지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고시로 갈음합니다.

3. 관련내용은 노원구청 문화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3일

노 원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월계동 산24-13 외 2필지

나. 사업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적 제440호 서울 초안산분묘군내 사유지 토지보상)

다. 사업규모 : 4,998㎡

라. 사업시행자

○ 성 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 주 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상계동)

마. 사업착수 및 준공년월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17.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유자 등 권리명세 : “별첨”

사. 고시방법 : 시보게재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문화과(☎2116-3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2016 초안산 분묘군 문화재 구역 사유지 토지보상)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 전체 면적 (㎡)	편입면적 (㎡)	2016년도 보상에 상응적 (㎡)	소유자 성명	주 소	이해관계인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와 내용	비고
3	월계동	산24-13	임야	2,753	2,753	2,753	한영자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125길 ** (쌍문동)				
12	월계동	산47-13	임야	450	450	450	김정심	서울시강서구양천로67가길56, ***동***호 (염정동, 이너스내에아파트)				
							류창수	서울시용산구이촌로64길15, ***동***호 (이촌동, 엘지한강자이아파트)				
							유세준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동 ***호 (용산동6가 파크타워)				
							은영혜	인천시연수구해송로30번길19, ***동***호 (송도동, 송도웰카운티3단지아파트)				
13	월계동	산68-2	임야	1,795	1,795	1,795	조재우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75, ***동 ***호 (반포동, 레미인퍼스티지)				
							영화기업(주)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2로 ** (당산동5가)				
							조영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동 ***호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				
							조승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조동현	서울 강남구 학동로11길 **, ***호 (논현동, 브라운스톤 로얄스위트논현)				
							조주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호 (압구정동, 데림빌라트)				
							조상현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29길 **, ***호 (압구정동, 데림빌라트)				

◆ 은평구고시 제2016-90호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46호(2013.07.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된 응암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응암동 578-64 외 1필지 토지 소유자로부터 공동개발(지정)변경 제안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은 평 구 청 장

가. 변경결정 사유

- 자율적(선택적) 공동개발이 가능한 토지를 일단의 대지로 계획하여 건축행위가 추진 되도록 변경코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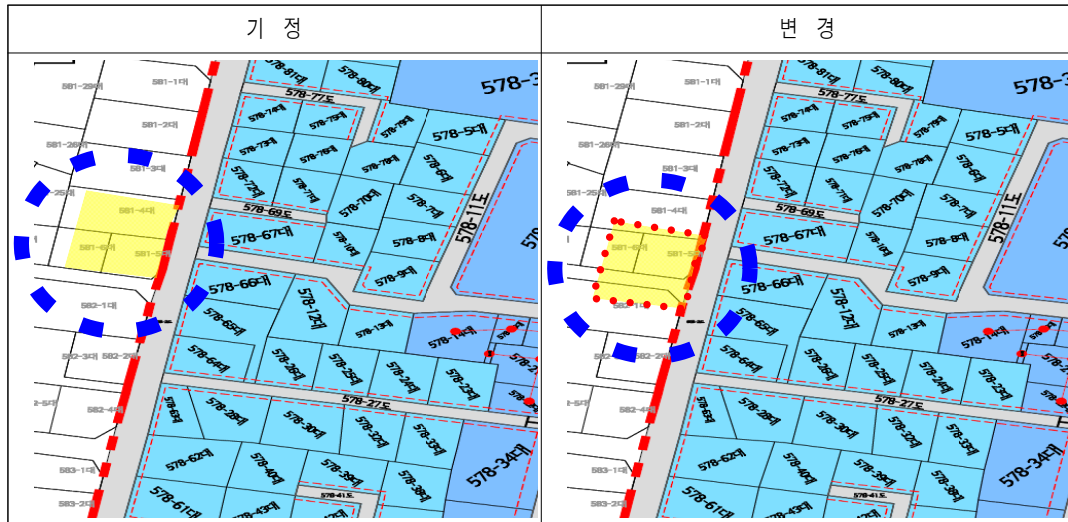
-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분	가구번호	위 치	대지면적 (㎡)	공동개발면적 (㎡)	비 고
기정	18	응암동 578-64	161	-	○자율적 공동개발 : 578-64, 578-65
		응암동 578-65	204		
변경	18	응암동 578-64	161	365	○자율적 공동개발 : 578-64, 578-65 ※ 자율적 공동개발 2필지 (응암동 578-64, 578-65)는 공동개발이 가능함
		응암동 578-65	204		

다. 기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사항 : 변경내용 없음

라. 관계도서는 은평구청 도시계획과(☎351-7412, 741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도시관리계획(응암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 응암동 578-64 외 1필지(응암동 578-65)



※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양천구고시 제2016-77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변경)승인 고시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6-68호(2016.10.20.)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 구역 B-1 획지(신정동 171-61번지 외 87필지) 지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 같은법시행령 제27조 및 제30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변경)승인하고 그 내용을 「주택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양 천 구 청 장

1. 사업명 :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구역 B-1획지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가. 성 명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 창 희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3. 사업시행개요
 -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 도시개발구역 B-1획지(신정동 171-61번지 외 87필지)
 - 나.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다. 대지면적 : 20,067.00㎡
 - 라. 건립규모 : 지하3층 지상15층 아파트 8개동(3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면적 : 4,011.0727m²
- 연 면 적 : 57,886.5298m²
- 건 폐 율 : 19.988%
- 용 적 륜 : 195.40%

4.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단위 : m²)

공급 구분	주택의 형 태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84.9076	84.9941	84.8843	84.9708	84.9153	84.8438	92.8705
분양	아파트	8	356	141	99	14	10	49	34	7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92.8472										
2										

5. 사업기간 : 사업계획 승인일 ~ 2018.10.30.

6. 사업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업주체	주식회사 엠피씨라이프 대표이사 이 석 하 (법인번호 : 110111-5786706)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330-1 (안천빌딩 4층)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표이사 이 창 희 (법인번호 : 110111-1714818)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역삼동, 하 나금융그룹강남사옥)
사업기간	사업계획승인일 ~ 2018.10.07	사업계획승인일 ~ 2018.10.30

7. 의제 처리사항 : 「주택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따라 협의된 사항

◆ 강서구고시 제2016-91호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3호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24호 공항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공항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고시된 사항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승인(경미한 변경) 하고 같은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강 서 구 청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경미한 변경)

가. 정비사업 명칭 : 공항시장정비사업

나. 시장정비사업 구역의 명칭 및 범위

구 분	정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공항시장정비사업	강서구 방화동 620-100번지 일대	14,830.0	감)281.0 지적 측량에 따른 구역면적 변경
변경	공항시장정비사업	강서구 방화동 620-100번지 일대	14,549.0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 변경없음

라. 시장정비사업 변경승인가요

1) 토지이용계획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기 정	증 감	변 경	
구역면적	14,830.0	감)281.0	14,549.0	100		100	
주상복합용지	12,464.0	감)220.0	12,244.0	84.05	증)0.11	84.16	
도 로	2,366.0	감) 61.0	2,305.0	15.95	감)0.11	15.84	기부채납

2) 건축시설계획

구 분	대지면적 (㎡)	건축면적 (㎡)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층 수	최고 높이	용도
기정	12,464.0	5,238.46	74,002.15	42.03	385.82	지하3층/ 지상14층	57.86m 미만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증감	감)220.00	증)38.164	감)1,482.981	증)1.07	감)25.62	변경없음		
변경	12,244.0	5,276.624	72,519.169	43.10	360.20	지하3층/ 지상14층		

○ 문화 및 집회시설 : 104동→105동, 지상1층 1,490㎡→지하1~지상2층 1,920.79㎡

○ 매장면적 : 4,128.15㎡→3,993.13㎡

○ 공동주택 세대수 : 207세대 → 266세대

2. 사업추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사유

○ 지적측량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및 건축계획 변경

3. 사업추진계획 변경 승인일 : 변경승인 고시일

4. 승인 처리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5.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일자리경제과(☎2600-6277)에 관련 도서

(첨부 생략)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6. 기타

- 사업추진계획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천구고시 제2016-78호**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62(1979. 8. 10)호로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되고 서울특별시 허가 번호 제170(1980. 5. 19.)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 허가 원부변경 허가를 득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여객자동차정류장』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6-983호(2016.9.29.)로 실시계획인가를 위해 열람공고한 시흥동 271-51번지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86조 및 제88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 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청(교통행정과)에 비치하여 토지, 건물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3일

금 천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정류장)
- 명칭 : 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후 정류장 부지 및 주차장부지 확장

다. 사업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면적 : 2,607㎡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규모(㎡)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시행	금회 시행	차후 시행		
결정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실시 계획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면적 변경없음 · 옹벽(71m) 철거 · 건물철거(1동) (지하1층,지상3층) · 정류장확대 · 부설주차장 설치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271-51

- 성명 : 범일운수(주) 대표이사 박도식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 : 2년 이내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사.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없음) : 별첨
- 아. 사업목적
 - 당초 설계 시 인접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이격하여 옹벽을 설치하였으나, 인접건축물의 신축 및 주차장의 협소로 인해 옹벽 및 관리동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확장하고자 함.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교통행정과(☎2627-1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조 서

■ 결 정 조 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규 모(㎡)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시행	금회시행	차후시행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정류장	금천구 시흥동 271-51	2,607	-	-	-	

■ 건축물 조서

구 분	건폐율(%)	용적율(%)	층 수	비 고
기정	17.75%	40%	최고3층 이하	지하1층, 지상3층
변경	4.41%	5.03%	최고2층 이하	지상2층

2. 건축물 계획 조서

동 별	층 별	명 칭	사용명칭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시흥CNG충전소 관리동	지하1층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111.40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1층	자동차 관련시설	주방	46.46	멸실	
	2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281.89	멸실	
	3층	자동차 관련시설	관리사무실	301.40	멸실	
	계			1,023.04	0.00	
시흥CNG충전소 사무동	1층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2층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기사대기실	16.35	16.35	
	계			32.70	32.70	
시흥CNG충전소 압축시설동	1층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CNG저장소	77.55	77.55	
시흥CNG충전소 충전동	1층	위험물처리 및 저장시설	충전기	21.00	21.00	
합 계				2,111.48	131.25	
건축면적				462.76	114.90	
용적률산정용 연면적				1,042.89	131.25	
건 폐 율			$114.90 \div 2,607 \times 100$	17.75%	4.41%	
용 적 률			$131.25 \div 2,607 \times 100$	40.00%	5.03%	

3. 토 지 이 용 계 획 조 서

구 분	규 격	면 적(m ²)		비 율(%)		비 고
		기 정	금회변경	기 정	금회변경	
건 축 부 지	여객자동차정류장	462.76	114.90	17.75%	4.41%	347.86(감)
정류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 (T=20CM)	1,719.24	1,907.1	65.95%	73.15%	187.86(증)
주차장 부지	아스팔트	72	492	2.76%	18.87%	기정주차수:6면 변경주차수:15면
통행로 부지		131	93	5.02%	3.57%	38.00(감)
기타부지(경사면)		222	-	8.52%	0.00%	222.00(감)
계		2,607	2,607	100.0	100.0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 지동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 면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시흥 동	271-51	대	2,607	2,607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계				2,607	2,607						

5. 수용 또는 사용할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서

작성자 : 하나측량토목설계공사 대표 강 태 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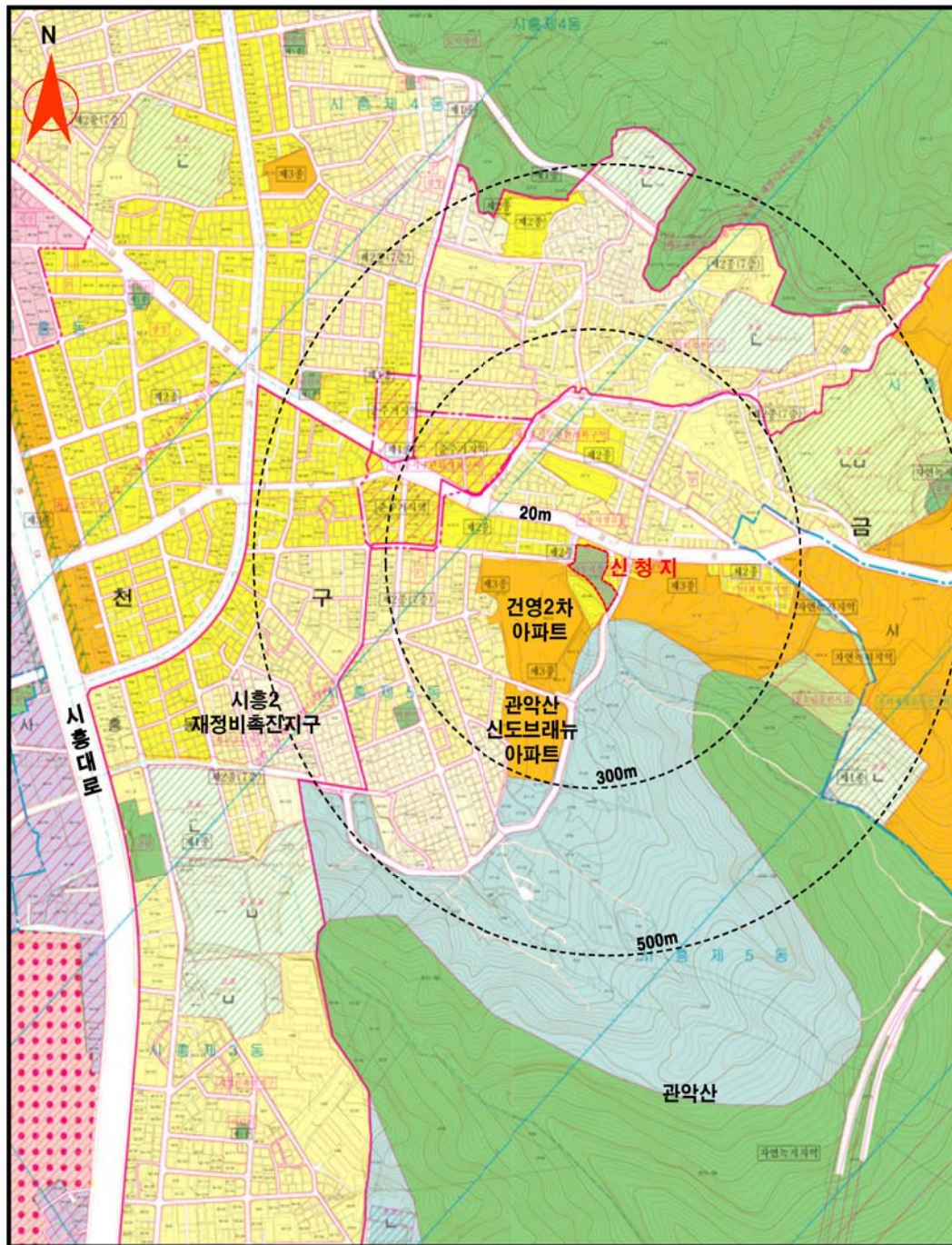
확인자 : 범일운수 주식회사 대표 박 도 식(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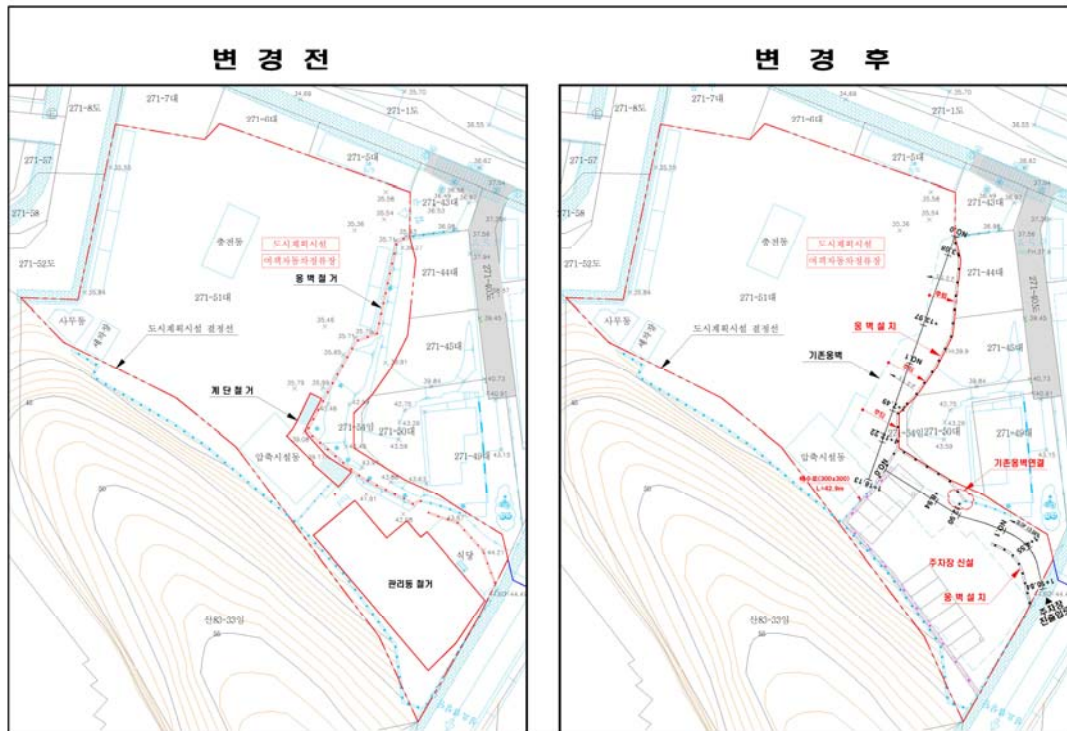
■ 사업명:범일운수 옹벽 및 관리동 철거공사

(단위:m²)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수량 (m2)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 명	주 소	관리 관계	
1	금천구	시흥동	271-51	관리동	철근콘크리트	1,023.04	범일운수 주식회사	서울 금천구 시흥동 271-51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근저 당권	
				사무동	철근콘크리트	32.70						
				압축시설동	철근콘크리트	77.55						
				충전동	일반철골구조	21.00						

위 치 안 내 도





◆ 영등포구고시 제2016-97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건설교통부고시 제768호('64.01.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79호('16.09.0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고시 제2016-92호('16.10.20)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림동 286-11~187-39간 도로개설공사』에 경미한 변경사항(물건추가)이 발생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동법률 제91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영 등 포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도림동 187-17 ~ 200-16 (변경없음)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2)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6-11 ~ 187-39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 폭 6m, 연장 90m (변경없음)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변경없음)

- 1) 성 명 : 영등포구청장
 - 2)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 마. 사업의 기간 : 실시계획 인가고시일로부터 5년 (변경없음)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 사. 변경사유(내용) : 물건추가
- 아. 시민열람 편의를 위해 영등포구청 도로과(☎ 2670-3813)에 관계서류 비치하고 있습니다.
(변경없음)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분할예정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 관리종류 및 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1	당초	도림동 187-17	대	7	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도림 동
	변경	변경없음										
2	당초	도림동 187-108	대	3	3	박순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5-6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도림동 187-18
	변경	변경없음										
3	당초	도림동 187-109	대	46	46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7-19		근저당권	도림2동 새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53	도림동 187-19
	변경	변경없음										
4	당초	도림동 187-110	대	2	2	나문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86-25					도림동 187-21
	변경	변경없음				성명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81-10					
5	당초	도림동 187-107	대	47	47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도림동 187-65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분할예정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폐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의 관리종류 및 내용			비고 (모지번)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6	당초	도림동 187-66	대	43	43	조창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26, 203동 306호(기좌동, 가좌주공아파트)				동일
	변경	변경없음									
7	당초	도림동 200-29	대	60	60	정형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750-5 한신아파트2차 201-1202				도림동 200-2
	변경	변경없음									
8	당초	도림동 200-30	대	19	19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5-8	압류	국 (기획재정부)		도림동 200-3
	변경	변경없음									
9	당초	도림동 200-34	대	87	87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도림동 200-16
	변경	변경없음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123 영등포구청장
 ■ 사업의 명칭 : 도림동 287-11 ~ 187-37간 도로개설공사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 명	주 소	관리종류	성 명	주 소	
1	당초	도림동 187-19	주택 (1층)	목조	55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대문			1식							
	보일러실			1식							
	변경	도림동 187-19	주택 (1층)	목조	55	박용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영로11길 8-16(도림동)	근저당권	도림2동새 마을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2동 156-4	
	대문			2식							
	보일러실			1식							
2	당초	도림동 187-66	주택 (1층)	목조	72	조창자	경상남도 진주시 가호로 26, 203동 306호(가좌동, 가좌주공아파트)				
	주택 (1층)		목조	72							
	대문			1식							
3	당초	도림동 200-2	주택 (1층)	목조	85	박동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 10, 1203동 1902호(논현동,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무허가
	주택 (1층)										
	변경		변경없음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관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4	당초	도림동 200-3	주택 (1층)	목조	13	황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 관악현대아파트 118-304	채권자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6, 3층	
	변경	도림동 200-3	주택 (1층)	목조	13	황미남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1001 관악현대아파트 118-304	기차분	손춘식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6, 3층	
5	당초	도림동 200-13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22	김일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15				
	변경	변경없음									
6	당초	도림동 200-14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파르빌)				
			창고		1식						
	변경	도림동 200-14	주택 (1층)	목조 및 시멘트 블록조	42	정세운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33 103동 601호(방배동, 삼환나파르빌)				
			창고		1식						
			대문		1식						

연번	구분	소재지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면적) (㎡)	소유자		소유권외권리종류및내용			비고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7	당초	도림동 200-15	주택 (1층)	목조	62	서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7 쌍용아파트 112-2301				
			부여		1식						
			창고		1식						
	변경	도림동 200-15	주택 (1층)	목조	62	서정민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807 쌍용아파트 112-2301				
			부여		1식						
			창고		1식						
8	당초	도림동 200-16	대문		1식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주택 (1층)	목조	19						
			창고		1식						
	변경	도림동 200-16	화장실		1식	김원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200				
			주택 (1층)	목조	19						
			창고		1식						
			화장실		1식						
			수목		1식						

■ 위 치 도



◆ 서초구고시 제2016-102호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41호(2010.4.27)로 결정된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내 내곡동 184-1호 일원의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 초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184-1호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 명칭 : 서울내곡 공공주택지구 공공청사1용지 내곡파출소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대지면적 : 500㎡,
 - 건축면적 : 171.96㎡
 - 연 면 적 : 335.16㎡
 - 층 수 : 지상2층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서초경찰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3.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번호	토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지적	편입	주 소	성 명	
1	서초구 내곡동	184-1 일원	답	-	49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79	서초경찰서	-
					3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8. 실시계획인가 조건 : 관련부서 등 협의사항 준수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건축과(☎02-2155-6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남구고시 제2016-14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81-287호(1981.07.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 3호선 압구정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철도)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강 남 구 청 장

1. 결정(변경)취지 : 논현로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압구정역 3번출입구 및 엘리베이터를 신설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임.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철도) 결정(변경) 조서
 -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변경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압구정역)	강남구 신사동 603번지	5,879.6	증)249	6,128.6	서고제287호 (1981.07.30)	

나.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철도:정거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기정(m)			변경(m)			변경후(m)			최초 결정 일	비 고
				길이	폭	높이	길이	폭	높이	길이	폭	높이		
신설	철도	도시철도 (3호선 압구정역) (3번출입구)	강남구 신사동 603 번지	-	-	-	17.5	38.1	지하8.39 ~지상3.8 (해발고도 12.40 ~ 24.59)	17.5	38.1	지하8.39 ~지상3.8 (해발고도 12.40 ~ 24.59)	-	사유지 편입부분 (499㎡)
		도시철도 (3호선 압구정역) (환기구)	강남구 신사동 603 번지	-	-	-	16.0	12.3	지하5.07 ~지상9.17 (해발고도 15.23 ~ 29.47)	16.0	12.3	지하5.07 ~지상9.17 (해발고도 15.23 ~ 29.47)		사유지 편입부분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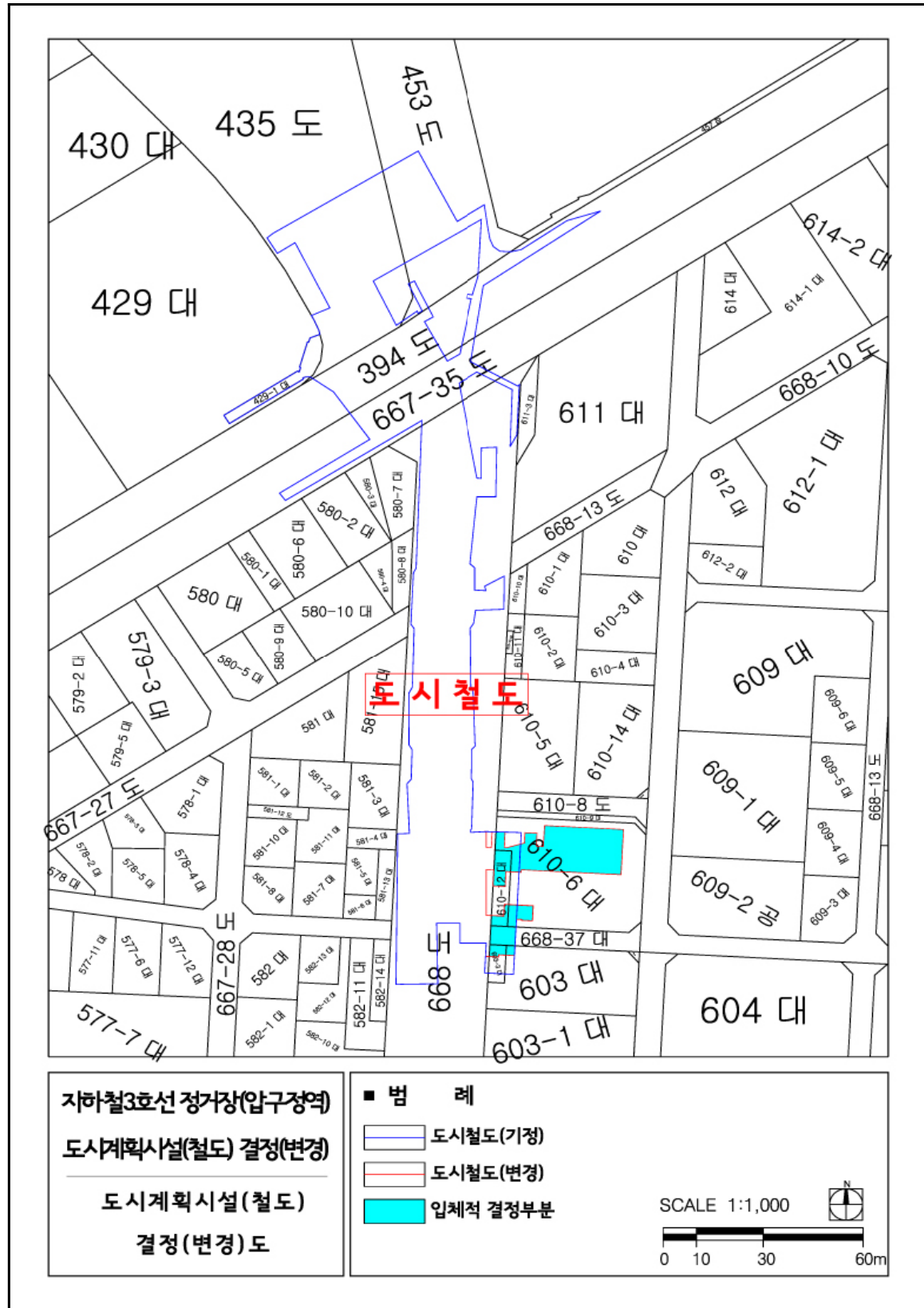
3. 관계도면 : 붙임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열람장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계획과(☎3423-610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면



구 공 고

◆ 동작구공고 제2016-926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유수지) 결정(안)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333-3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동 작 구 청 장

1. 입안사유

- 침수취약지역인 동작구 사당역 주변의 침수방지를 위해 희망어린이공원 지하에 우수를 저류할 수 있는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수해를 예방하기 위함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안)

구 분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유수지	저류시설	동작동 333-3	-	증)899	899	희망어린이공원 내 중복결정 -지상 : 공원 (기정, 2,654.3㎡) -지하 : 유수지(저류시설)

3. 공 고 일 : 2016. 1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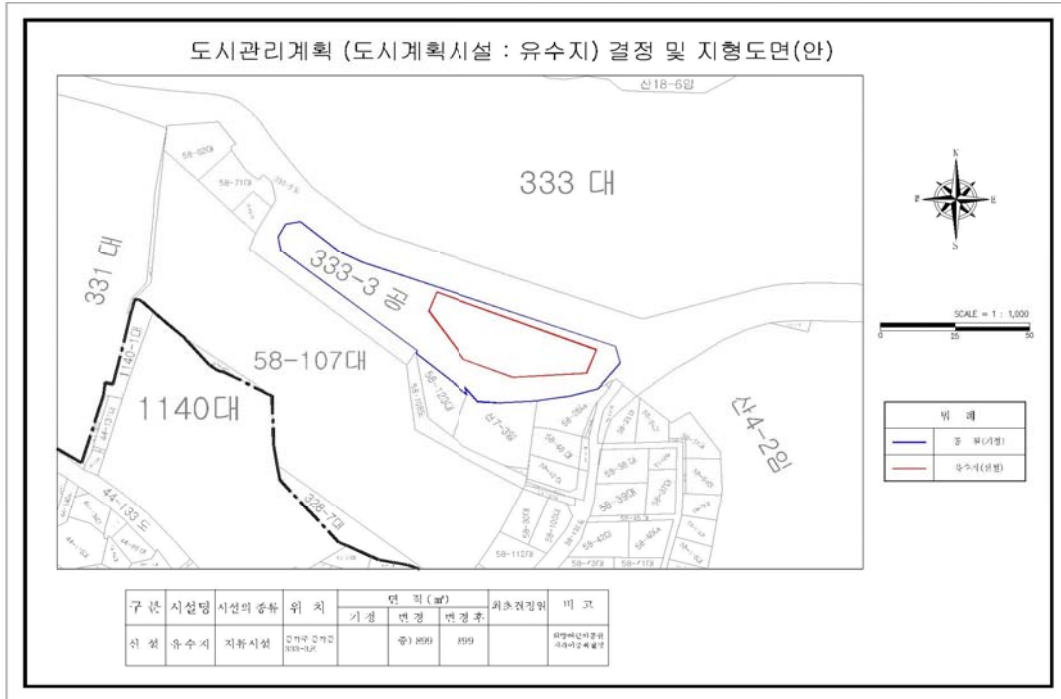
4.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820-9559)

6. 관련도서 : 열람장소 비치

7. 기타 :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변경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사업소고시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2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 해양기술이앤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중앙로 120	잠실대교~ 팔당댐 (서울시계 내 한강)	선박 1척 (고무보트 1척)	수중 대형 폐기물 현황조사	2016.10.25. ~ 2016.11.24.	2016. 10.25.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3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계 내 한강 (동호대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동호대교 보수공사	2016.10.27. ~ 2016.11.25.	2016. 10.26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4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운항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주)골든블루마리나 (대표 김영진)	부산시 강서구 가덕해안로 ***	잠실대교 ~ 행주대교	파워보트 2척 구조선 1척 (126㎡)	수상레저사업	2016.10.27. ~ 2016.12.31.	2016. 10.27.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5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영흥중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8길 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96-119	선박 27척 (기선 8척, 부선 19척)	공사 투입 대기를 위한 수상 정박대기	2016.11.1. ~ 2016.11.30.	2016. 10.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6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 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자		점용허가(사용) 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허가구역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안전총괄본부 교량안전과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울시계 내 한강 (서강대교)	선박 2척 (기선 1척, 부선 1척)	서강대교 우물통 보수공사	2016.11.1. ~ 2016.11.30.	2016. 10.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8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 받은 자		허가점용(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하천명	점용(사용) 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6-7)	한 강	총 4,759.96㎡ -여의도1,344.96㎡ -반포1,897㎡ -뚝섬1,518㎡	수난구조업무 및 선박계류	2016.10.30. ~ 2019.10.29	2016.10.31

◆ 한강사업본부고시 제2016-259호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하천점용허가(운항)하고
하천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허가받은자		점용허가(사용)개요				허 가 연월일
성 명	주 소	영업구역	운항선박	점용목적	점용기간	
대한민국특수임 무유공자회 (대표 이종열)	서울특별시 은평구 동일로 684, 1층 (녹번동 20동)	잠실대교 ~ 서울시계간 (한강상)	수상관광 콜택시 8척 (5톤이하)	한강 수상관광콜 택시 운항	'16.10.12 ~ '16.12.31 (2개월 20일간)	'16.10.31

사업소공고

◆ 송파소방서공고 제2016-2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경고)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2. 개별기준 라목에 의거 행정처분(1차, 경고) 후, 통지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송 파 소 방 서 장

1. 귀 업체의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공시송달) 후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경고)을 하였으며 만약, 2016. 12. 15.(목) 까지 소방시설업 영업재개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소방시설업이 등록취소(행정처분 2차) 됨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처분 내용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내용 (처분일)	위반법규	처분법규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 제송파2012-03호 (2012. 12. 28.)	(주)태광이앤지 서울 송파구 풍성로25길 25-1, 2층	임하기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	경고 (2016. 10. 19.) 시정명령 (2016. 12. 15. 한. 영업재개신고)	소방시설 공사업법 제9조제1항 제4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의 2.개별기준 라목

2. 행정심판 등의 고지

가. 본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의 경우 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송파소방서장) 또는 재결청(서울특별시시장)에 청구할 수 있고

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송파소방서 예방과 위험물안전팀(☎02-431-410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 타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69호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안양천(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금천구청장
 -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668-24번지 등 6필지
 - 면 적 : 206.4㎡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배수관 및 이중수문 설치
 - 내 역 :
 - 이중수문 1개소(2@3.5m×2.0m)
 - 배수관 1개소(D=1,800mm), L=74.9m
 - 날개벽 1개소
5. 점용기간 : 2012.01.24.~2017.01.23.(5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71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이사
 - 주 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53(서소문동)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335, 1335-4번지

- 면 적 : 597.4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안양 열병합 발전소 발전기자재 수송을 위한 임시 물양장 설치
 - 내 역 : 임시 물양장 1식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2.01.~2017.04.30.(2016.12.01.~2017.04.30.)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73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81-1
 - 면 적 : 29.1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구리암사대교 남단램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 설치
 - 내 역 : · 콘크리트 기초 (3m×9.7m×0.5m)
 - 컨테이너 설치 (2.8m×9.5m×3.8m) 1개소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0.27.~2021.10.26.(2016.10.27.~2016.12.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77호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81-1
 - 면 적 : 29.1m²
-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구리암사대교 남단램프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컨테이너 설치
 - 내 역 :
 - 콘크리트 기초 (3m×9.7m×0.5m)
 - 컨테이너 설치 (2.8m×9.5m×3.8m) 1개소
- 5. 점용기간(공사기간) : 2016.10.27.~2021.10.26.(2016.10.27.~2016.12.01.)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16-379호**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변경)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한강(국가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장
 -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1층(성수동1가)
3.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시 관내 한강 L=41.5km
 - 면 적 : <당초>1,469,781m²
<변경>1,469,781m², 일시 45.1m²
4.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한강 르네상스 사업 시행
 - 내 역 :

당 초	변 경
- 강서습지 생태공원 등 한강 르네상스 사업 1식	- 강서습지 생태공원 내 조류 관찰대 보완공사 (전망데크 1개소 및 부대시설 1식)

5. 점용기간(공사기간) : <당초> 2008.03.17.~2013.03.16.
<변경> 2013.03.17.~2018.03.16.(2016.11.01.~2016.11.30.)



함께 서울

시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